

對 外 秘

破棄：1992. 12. 31

管理
番號

92-94

2P
50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5次 委員接觸 會議錄

1992. 8

統 一 院

P/8

對 外 秘

破棄：1992.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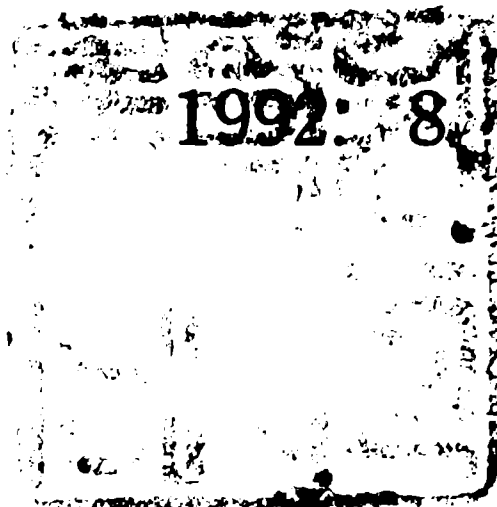
管理
番號

92-94

29
50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5次 委員接觸 會議錄



統 一 院

警 告 文

本 文件은 大韓民國의 安全保障上 重要な
祕密內容이 收錄되어 있으므로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이를 違反할 때는 關係法
規에 의거하여 措置됩니다.

1. 關係者外의 閱覽 및 取扱을 금함.
2. 複製 및 複寫를 금함.
3. 直接的인 引用 및 公表를 금함.
4. 破棄期日을 嚴守하여야 함.

— <目 次> —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2. 8. 10(月), 10:00~12:25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參席者

구분	우 리 측	북 측
위 원	金泰淵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宋榮大 (통일원 자문위원) 辛鉉雄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김채성 (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승국 (로동청년사 부주필)
수행원	趙明均, 孫鍾洙, 李在浩, 金炳培	한영호, 김창우, 김춘단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 委員 入場 및 人事 交換>

남(송영대) : 내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북(손종철) : 예, 입추가 7일날이던가요?

남(송영대) : 지난 7일날이 입추였죠.

북(손종철) : 그래서 어저께는 선기가 좀 들었어요. 그쪽에도 기후들은 선기가 좀 들었지요?

남(송영대) :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태풍 제니스호가 북상한다고 해서 우리측에서 상당히 긴장을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일본열도를 따라서 북상하는 바람에 피해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어디 영향 없었습니까?

북(손종철) : 영향 없었어요. 그리고 장마도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저수량들은 조금 긴장하다고 그러더구만...

남(송영대) : 예, 조금 그런 것 같지요.

북(손종철) : 우리는 강수량은 좀 적었지만...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어요. 2천리 공사라고 2천리 수로들을 쪽 빼고 강들을 막아서... 그래서 그런 데서는 영향이 크게 없고...

남(송영대) : 모레 12일날이 말복이니까 더위도 이제 막바지 같습니다. 우리쪽에서는 오늘 새벽에 낭보가 하나 와서 상당히들 기뻐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에서 우리 황영조선수가 금메달을

봤어요.

텔레비전 중계하는 것을 보니까 일본선수하고 1, 2위를 다투다가 막판에 가서 일본선수를 제치고 결승테이프를 끊는 것을 봤는데, 아마 돌이켜보면 지난 36년에 베를린올림픽 때 손기정선수가 금메달을 딴 이래 56년만에 세계를 제패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 이것 값진 금메달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민족적 영광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손종철) : 우리도 지금 올림픽을 보면서 아주 조선민족이 슬기롭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경량급에서는 아마 우리가 대체로 다 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레슬링, 권투...

남(송영대) : 저도 경기 봤어요.

북(손종철) : 더 통쾌한 것은, 우리 모두 보면서 그랬는데, 우리 선수들이 권투하고 자유레슬링에서 미국선수들을 제끼는 장면, 이것은 대단히 아주 통쾌하게 봤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민족이 슬기롭다(웃음)...

남(송영대) : 그래서 지금 우리 부속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회문화교류부문이 있는데, 이것 부속합의서 빨리 타결지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문화공동위원회 가동되면 단일팀부터 먼저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번에 단일팀 내보냈으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제치고 한 4위 정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손종철) : 그래서 우리 합의서 빨리 결속을 짓고 합시다. 오늘 회의형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송영대) : 뭐 관례에 따라 비공개로 하시죠.

북(손종철) : 예, 비공개로... 그리고 오늘 5차지요?

남(송영대) : 그렇습니다.

북(손종철) : 1차에 우리가 했고... 오늘 5차에 제가 좀 먼저 발언합니다.

남(송영대) : 그래요? 사실 뭐 우리도 오늘 큰 보따리 가지고 나왔는데,
내 욕심 같아서는 우리 보따리 먼저 풀어 보여 드리고 그리고 한번 했
으면 생각을 했는데(웃음), 어떻습니까?

북(일 동) :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대로 합시다.

남(송영대) : 그래요? 저는 뭐 어느 쪽이나 좋습니다.

북(손종철) : 예, 그대로 합시다.

남(송영대) : 자, 기자선생들 그러면 자리정돈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생은 휴가 좀 다녀 오셨어요?

북(김승국) : 삼복더위에 좀 쉬어야지, 그런데 이것 회담 때문에 똑똑히
쉬지 못하겠다 말이야.

북(손종철) :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北側 첫 發言>

남측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6차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부속합의
서 작성을 위한 위원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쌍방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여섯 차례의 분과위원회와 네 차례의 위원접촉을 통하여 부속합의
서 토의를 진지하게 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쌍방사이에 존재하는 의견차이를 좁히고 부속합의서의 문안정리를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래의 뜨거운 통일 지향에 비해 볼 때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이제 우리는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한 데 따라 한 조항 한 조항씩 착실하게 정리해 나감으로써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기일 안에 부속합의서를 반드시 내놓아야 합니다. 이 일은 얼핏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이나 냉정하게 따져 보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논의를 거쳐 차이점을 훨씬 좁혀 왔지만 아직도 쌍방의 안 들에는 일련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제협력·교류당사자의 당국승인문제, 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에 따라 교통로를 개설하는 문제, 자유래왕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요인 철폐문제, 이런 것 등은 북남합의서 리행에 대한 근본립장상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측에 이미 진행한 분과위원회 회의들에서 알아들을 수 있으리만큼 설명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남사이의 협력·교류사업을 폭넓게 진행하고 그것이 진실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에 도움을 주게 하자면 그 자체를 제한하거나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려는 그러한 립장에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속합의서 작성은 또한 그 시일로 놓고 보더라도 매우 긴박한 과업입니다. 우리가 부속합의서를 작성·완성해야 할 시한까지는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 쌍방이 내놓은 부속합의서 초안들을 보면 조항구성과 그 문안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부속합의서 자체가 북남이 공동으로 채택해야 할 문건인 것만큼, 장·절체계는 물론 용어표현에 이르기까지 자자구구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품을 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쌍방 위원들이 반드시 토의·해결해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9월 5일은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이 설정한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이고, 또 부속합의서 작성은 북남사이에 협력·교류를 실현하고 그것이 나라의 통일로 이어지기를 한결같이 바라는 온 겨레의 민족적 중대사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9월 5일 전으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할 책임에서 물러서서도 안되고, 또 후퇴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부속합의서 작성사업을 직접 담당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데에 크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나는 오늘 위원접촉이지만 우리의 견해를 표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부속합의서 토의에서 북남합의서를 존중하고 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남합의서를 존중하고 그에 충실하는 것은 부속합의서 작성의 근본원칙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필연적 요구인 것입니다.

북남합의서는 협력·교류사업의 내용과 원칙을 밝힌 것으로서 부속합의서 작성의 유일한 기초인 것입니다. 또한 부속합의서 자체가 기본합의서에 명기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인 것이니

다.

따라서 북남합의서를 존중하고 그에 충실하는 립장에 서야만 부속합의서를 합목적성 있게 작성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부속합의서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남합의서를 존중하고 그에 충실하는 것은 부속합의서 문안구성과 내용서술 그리고 문건합의의 모든 공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부속합의서를 그 성격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성하는 부속합의서는 바로 북남합의서에 명기된 협력·교류사항들의 구체적 리행과 준수를 위한 대책으로 규정하는 문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는 선언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실천적 성격, 말하자면 현실성이 있고 가장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문건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실천적 성격을 잘 살리는 문제는 바로 그의 순조로운 리행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부화하는 것이 곧 구체적인 대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속합의서를 지나치게 세부화해도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모든 조항들에서 북남합의서의 정신과 요구를 옹기 살리면서도, 구체적 현실에 토대해서 합의서 리행에서 걸림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과 방법까지 예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부속합의서 작성에서 나서는 이상의 원칙적 요구로 볼 때 우리측이 내놓은 안은 아주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번 제6차 분과위원회에서 우리측은 귀측의 안도 대폭 수용해서 새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의 합의서안은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체모에 있어서나 규제원칙과
담아야 할 내용에 있어서나 나무랄 데 없는 완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우리 쌍방은 오늘에 와서까지 네것, 내것으로 갈라놓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라면 대범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
다.

우리는 귀측이 종래의 그릇된 립장에서 떠나 우리의 수정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늘 접촉에서 좋은 안을
내놓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북남합의의 리행
을 위한 토의가 심화되고 있고 부속합의서 문안정리가 일정에 오른 이런
현 시점에서 더는 거기에 장애를 조성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응당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리의 평화적 핵동력 개발을 걸고드
는 외세의 부당한 핵소동에 맞장단을 치면서 민족 앞에 확약한 합의들을
거부·회피하는 립장을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약속해 놓고서도 포커스렌즈훈
련이라는 전쟁연습을 도상연습으로가 아니라 최신에 전쟁장비와 방대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실동훈련으로 벌리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평화적이고 반대화적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과 대결의 불우한 희생자로서 갖은 고생을 다 겪은 고령의
리인모로인을 송환하는 것도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요
구와 세계의 진보적 양심이 바라는 대로 그를 하루빨리 돌려보내는 조치

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귀측이 우리와 서로 화해하고 불가침하며 서로 협력하여 살기로 한 서약을 그대로 지킬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핵소동을 당장 중지하고,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계획을 취소해야 하며, 로부모방문과 리인모로인 송환 문제를 더는 전략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오늘 접촉에 립하는 우리측의 견해를 개괄적으로 밝혔습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위원접촉에서는 먼저 지난번 제6차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 내놓았던 우리측 수정안에 대한 귀측의 의견부터 듣고, 그 다음 쌍방안들을 대조해 나가면서 조항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갈라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문안정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부속합의서 문안정리에서는 기본용어 표현은 북남합의서에 명기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례대로 편의주의적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귀측안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남(송영대) :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한 것 가운데에 우리가 기본합의서를 존중해야 된다, 또 이 부속합의서의 성격은 선언적이 아닌 구체성을 띠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핵문제, 포커스렌즈훈련문제, 이인모문제 등에 대해서 말한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우리측 위원장이 우리측의 입장을 누차 밝혔기 때

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측에서 준비한 첫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측 첫 發言>

우리 쌍방은 지난 6차 분과위원회에서 각기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속합의서의 명칭, 전문 및 제1장, 제2장의 장제목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또 교통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도 거의 의견접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꽤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의견차이가 남아 있고 또 의견이 일치되거나 접근된 사항에 대해서도 그 문안정리 작업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이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전에 손선생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접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지난번에 제시한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위원접촉을 활성화시키고 부속합의서 작성을 하루라도 앞당겨 완결지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귀측 의견을 대폭 수용한 새로운 우리측 수정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측 문건을 우선 넘어 드리겠습니다. 귀측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쌍

방안을 대비표로 만들었습니다.(대비표 : 부록 참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 읽지는 않고 지난번 우리측안에서 달라진 부분만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측 수정안이 제6차 수정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목, 또 전문, 제1장 경제교류·협력에 관해서는 6차 분과위원회 의 때 이미 합의된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틀림없지요?

다음 제1조는 기본합의서 15조와 일치시켰습니다. 1항과 2항, 3항은 우리측 기존 2항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3개항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종래는 1개항이었는데 이걸 3개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귀측 안하고 배열을 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4항은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5항도 그대로입니다. 다음 6항과 7항은 우리측 기존 6항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늘린 것입니다. 다음에 8항은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9항도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10항도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다음 11항은 우리측 기존 7항에다가 귀측 제안을 수용해서 표현만 일부 바꿨습니다. 다음에 12항은 우리측 기존 9항을 귀측 안을 수용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2조는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2조 1항은 우리측 기존 1항에 귀측 안을 수용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2조 2항은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제3조는 기본합의서 19조와 일치시켰습니다. 제3조 1항은 귀측 안을 거의 수용했습니다. 2항은 우리측 기존 3항에다가 귀측 안을 고려해서 수정을 가했습니다. 3항은 우리측 기존 2항에다가 귀측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 4항은 우리측 기존안 본문에 있었던 것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별도 항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5항은 우리측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다음 6항도 그대로입니다. 7항도 그대로입니다. 8항도 그대로입니다.

제4조는 기본합의서 제20조와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제4조 1항은 우리측 기존안에 『빠른 시일 안에』라고 하는 말을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2항 그대로입니다. 3항 그대로입니다. 4항은 우리측 기존안 본문에 있었던 것을 별도로 분리시켰습니다. 5항 그대로입니다. 다음 6항 그대로입니다. 7항 그대로입니다.

다음 제5조 1항, 2항은 우리측 기존안 6조를 귀측 안에 맞춰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우리측 기존안 1조에 있었던 것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뒤로 이동시켰습니다.

제7조 그대로입니다.

다음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은 지난 6차 분과위원회 때 합의한 그대로입니다.

제8조는 기본합의서 제16조와 일치시켰습니다. 8조 1항 그대로입니다. 2항 그대로입니다. 다음 3항은 우리측 기존 2항과 5항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다음 4항은 그대로입니다. 5항 그대로입니다. 6항은 우리측 기존 7항을 귀측의 경제교류 관련조항을 고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9조는 기본합의서 17조와 일치시켰습니다. 9조 1항 그대로입니다. 다음 2항과 3항은 우리측 기존 4항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두개 항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4항 그대로입니다. 5항 그대로입니다. 6항 그대로입니다. 7항은 우리가 귀측 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본문, 1항, 2항은 우리측 기존 11조를 귀측 안을 수용을 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제11조는 우리측 기존 8조 내용을 그대로 두되, 배열의 순서에서 귀측 안을 고려해서 이동시킨 것입니다.

다음 12조는 그대로입니다.

제3장 제목에 관해서는 인도적 문제의 해결로 하자는 귀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음에 제13조는 기본합의서 18조와 일치시켰습니다. 제13조 1항 그대로입니다. 2항은 우리측 기존 2항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3항 그대로입니다. 4항은 우리측 기존 4항을, 귀측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습니다. 5항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6항은 우리측 기존 6항을 귀측 안을 고려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7항 그대로입니다.

다음 제14조는 우리측 기존 14조 내용을 그대로 두되, 귀측 의견을 고려해서 표현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5조는 우리측 기존안에는 없었습니다만, 귀측 안의 일부 내용을 고려해서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제4장 수정·발효는 우리측 기존안 그대로입니다.

제16조 그대로입니다.

제17조 그대로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우리측 수정안의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참

고로 여기서 이와 같은 우리측 수정안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용과 표현면에서 귀측 안을 대폭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우리측 수정안을 통해서 쉽게 발견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둘째로는 각 조의 본문은 지난 6차 분과위원회 때의 귀측 의견을 고려해서 기본합의서와 일치시켰습니다. 부속합의서 각 조항을 기본합의서와 일치시킬 경우에 각 장에 이행기구를 명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귀측 위원장의 발언을 유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조항 배열순서도 귀측 안과 거의 일치시켰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네 군대를 제외하고서는 배열순서가 거의 같습니다. 나는 이로써 쌍방 안이 거의 접근되었으며, 이것을 가지고 내용정리 내지는 문안정리를 하게 되면 위원접촉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것으로 나의 첫 발언을 마치고,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쌍방은 지난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귀측이 주장해 온 부당한 전제조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무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산가족방문단사업은 우리 쌍방 당국이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첫 가시적 성과로 겨레 앞에 내놓은 선물입니다. 또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도

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온 겨레가 희망과 기대를 걸어온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상징적 사업이고, 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족적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단사업이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무산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이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전제조건을 철회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 부속합의서 토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손종철) : 송위원장이 발언하는 걸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대조표,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좀 일찍이 이렇게 했다면 이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까지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역시 이렇게 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것... 그래서 상당한 전진을 가져온 건 틀림없는데 좀더 빨리 했다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고 ...

두번째는 이제 로부모방문단에 대한 이 문제는 전제조건을 우리가 철회할 것이 아니라 귀측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원래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게 반드시 사회현상에는 있는데, 왜 그렇게 됐겠느냐? 그래, 우리 사실 얘기할 게 많습니다.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첫 선물로... 말하자면 7차 합의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귀측에서 그때에는 없던 핵문

제요, 또 포커스렌즈요, 이런 것들이 거기 턱 장애로 조성되면서 계속 그런 발언들이 지금 올려나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첫 선물인데, 기본합의서는 채택 안되고 첫 선물만 먹는다는 법이 없다 이거지. 왜? 그게 다 기본합의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야 온 겨레가 정말 열망하는 이 로부모방문단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주자, 그런 뜻에서 이걸 제기하고 이걸 추진시키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런데 여기에 핵문제란 이런... 이걸 지금 기본합의서에도 없어요, 핵문제라는 건... 이런 게 나오지, 또 7차 고위급회담 때도 이것 없고, 그리고 포커스렌즈 실동훈련으로 넘어가는 이런 훈련이 거기 명기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평화협상하고 전쟁은 절대로 같이 놓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 명백합니다. 그저 귀측에서 이쪽 핵을 거는 것, 포커스렌즈문제, 그 다음에 그토록 리인모로인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대체로 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로부모방문단 전에 주겠다고 발언들이 다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신성한 문제인데, 리인모로인의 요구 또 그의 성의, 이런 걸 봐서 정말 신의있게 대해줘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흥정거리로 삼아서는 이게 절대로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철회를 하면, 여기에 우리 아무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7차 고위급회담 당시 그 상황으로만 나오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적 사업입니다. 이것은 온 겨레가 희망과 기대를 걸어온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상징적 사업이고, 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민족적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단사업이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무산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이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전제조건을 철회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내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그러면 부속합의서 토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북(손종철) : 송위원장이 발언하는 걸 이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이 대조표, 이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좀 일찍이 이렇게 했다면 이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까지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역시 이렇게 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이것... 그래서 상당한 전진을 가져온 건 틀림없는데 좀더 빨리 했다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고 ...

두번째는 이제 로부모방문단에 대한 이 문제는 전제조건을 우리가 철회할 것이 아니라 귀측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원래 그 원인과 결과라는 게 반드시 사회현상에는 있는데, 왜 그렇게 됐겠느냐? 그래, 우리 사실 얘기할 게 많습니다.

기본합의서를 성실히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첫 선물로... 말하자면 7차 합의문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귀측에서 그때에는 없던 핵문

제요, 또 포커스렌즈요, 이런 것들이 거기 턱 장애로 조성되면서 계속 그런 발언들이 지금 울려나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첫 선물인데, 기본합의서는 채택 안되고 첫 선물만 먹는다는 법이 없다 이거지. 왜? 그게 다 기본합의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야 온 거래가 정말 열망하는 이 로부모방문단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주자, 그런 뜻에서 이걸 제기하고 이걸 추진시키자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런데 여기에 핵문제란 이런... 이걸 지금 기본합의서에도 없어요, 핵문제라는 건... 이런 게 나오지, 또 7차 고위급회담 때도 이것 없고, 그리고 포커스렌즈 실동훈련으로 넘어가는 이런 훈련이 거기 명기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평화협상하고 전쟁은 절대로 같이 놓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다 명백합니다. 그저 귀측에서 이쪽 핵을 거는 것, 포커스렌즈문제, 그 다음에 그토록 리인모로인에 대한 문제를... 앞에서 대체로 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로부모방문단 전에 주겠다고 발언들이 다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것은 아주 신성한 문제인데, 리인모로인의 요구 또 그의 성의, 이런 걸 봐서 정말 신의있게 대해줘야 되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흥정거리로 삼아서는 이게 절대로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철회를 하면, 여기에 우리 아무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7차 고위급회담 당시 그 상황으로만 나오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순리고... 그런데 귀측에서는 엇그제 총재성명이 나오고 그리고 쪽 나온 것을 보니, 우리 보고 핵문제를 연결시키지 말라, 또 포크스렌즈 연결시키지 말라,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고가 되는 조건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리인모문제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삼 강조하건대, 이제 첫 발언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걸 철수만 하면 빨리 이것 하자. 우리 지금도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귀측 안에서 지금 보니까 많은 문제들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방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일장부터 내려가면서 공통적인 것을 먼저 다 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내려가면 또 대처되는 문제들은 그 과정에서 서로 리해가 깊어진다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걸린 문제들은 또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방법으로 하나 하나 문안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송영대) : 예, 처음부터 내려가면서 공통적인 것은 추려내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토론해 보자 하는 말씀인데요.

북(손종철) : 먼저 오늘은 우리 겨레들이 바라보는 협력·교류에서 많은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이렇게 되어야 또 보답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을 빨리 우리가 결속지어 놓고 그 다음 차이나는 것 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남(송영대) : 쌍방안을 정밀히 비교해 보면 제목·전문·장·각조·세항을 합치면 81개 사항이 문안정리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81개 사

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측에서 보전대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 41개, 접근이 되어 있는 것이 23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17개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가하는 데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 대체로 합의서 전반부쪽, 중반부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1조 1항부터 문안정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견을 보이고 있는 조항에서 이렇다 저렇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토의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는 각 조항별로 내용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문안정리를 하자... 첫 단계에 해당되는 조항별 내용정리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손선생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1조 1항부터 쪽 훑어 내려가면서 각 조나 항에 담겨 있는 내용과 뜻에 관해서 쌍방의 인식을 통일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쪽 내려가면서 이견 의견이 일치된 걸로 봅시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문안정리 때 확실하게 합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접근 가능한 것은 내용을 한번 조정해 보고 말이죠.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이견이 있는 조항에 관해서는, 제가 보전대는 2가지가 있어요. 본질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본질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일방만이 제기하는 조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의견교환해 보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쪽 훑어 놓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번 위원접촉 때는 문안정리를 해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손종철) : 그래서 이제 내용조정에서는 우리가 못할 게 많습니다. 문안정리가 분과위원회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기본사명이거든요. 그냥 순서대로 훑어 나가면 역시 시간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측의 먼저번 안을 많이 연구해서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걸 알려 주고 토의하면서 귀측이 이제 제기한 이 수정조항들을 같이 넣어서 우선 1장에서 공통점 제껴내자, 그리고 문안정리까지 다 끝내자, 이제는 하나씩 완성해 나가야 되겠다... 시일도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이거 뭐 계속 매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지고 들어가서 또 연구해서 일치시켜 나오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좀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안정리 몇 조항 됐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지. 그저 내용조정 해놓고 문안정리는 다음에 하자고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도 내용조정 정도로 끝났구나, 이렇게 되면 좀...

북(김채성) : 아무래도 그쪽에서 오늘 적지 않은 문제를 수정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이제 우리 손위윈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미 내놓았던 조항하고 귀측이 내놓은 조항에서 거의 일치되는 것들은 다 쪽 내려가면서 문안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견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들어가서 연구하고 귀측에서도 연구하고...

북(김승국) :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

남(송영대) : 그러니까 공통점부터 도출해서 그것을 문안정리해 보자 하는 얘기죠?

북(일 동) : 예.

북(김승국) : 문안정리까지 끝내면 그 조항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60여개 복잡한 조항이 머리에서 다 제거되니까 단순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품은 같이 든다. 역시 아무 때나 김서방 먹을 떡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품이 더 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떼어내 가지고 ...

남(송영대) : 이러나 저러나 뭐 결과는 비슷해요.

남(신현웅) : 양쪽에서 생각을 거의 같이하는 것 같아요.

북(김승국) : 명백하게 문안정리까지 해서 떼어내 버리고 항수가 적어지면 우리 머리도 좀 단순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남(송영대) : 자, 그러면 좋습니다.

북(손종철) : 선별적으로 합시다.

남(송영대) : 그렇게 합시다.

북(손종철) : 완성품 하나씩 자꾸 내놓자.

남(송영대) : 일단 대비표를...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 때 이미 다 대조를 해서 이것은 일치된다, 이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북(김채성) : 예.

남(송영대) : 공통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손종철) : 공통점을?

남(송영대) : 예,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를 하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제목, 전문은 이미 다 되었고...

북(손종철) : 예, 그것은 합의되었고...

남(송영대) : 다음 제1조, 이것은 공통점, 일치점으로 봅니다.

북(김채성) : 예, 그것은 이번에 같이 수정해 나왔으니까...

북(손종철) : 그런데... 지금 1조지요? 1조에서...

남(송영대) : 아, 가만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1장만 놓고 말이죠, 공통점을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측 8항, 귀측 9항 이게 일치가 됩니다.

북(김채성) : 관세...

남(송영대) : 다음에 우리측 9항하고 귀측 11항 이것도 몇 건 일치됩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측 10항하고 귀측 12항 일치됩니다. 우리측 11항하고 귀측 13항 일치됩니다. 우리측 12항, 귀측 14항 일치됩니다.

다음 제2조 일치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2조 1항 일치됩니다. 2항 일치됩니다.

제3조 일치됩니다. 다음에 3조 1항, 귀측 3조 1항 다 일치됩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이제 부산이냐, 포항이냐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걸 뭐 조정하면 되고... 다음에 우리측 2항하고 귀측 4항 이것도 뭐 거의 일치돼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측 4항, 귀측 5항 일치됩니다. 또 우리측 5항, 귀측 6항 일치됩니다. 다음에 우리측 7항, 귀측 7항 일치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제4조, 제4조 역시 상당히 일치됩니다. 그렇죠? 우리

측 5항하고 귀측 5항하고 일치됩니다.

다음에 제5조 쌍방안이 일치됩니다. 5조 1항 역시 일치됩니다. 또 5조 2항 일치됩니다. 단지 표현에 좀 차이가 있고요.

다음 넘어가서 제2장 제목 일치됩니다.

북(김채성) : 아, 입장만 먼저 합시다, 입장만...

남(송영대) : 이렇게 놓고서 말이죠, 그러면 제1조부터 한번 볼까요?

북(손종철) : 봅시다, 1조부터...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됐습니다.

남(송영대) : 그렇죠. 이제 경제교류·협력은 우리측 표현이고 그쪽에서는 협력과 교류...

북(손종철) : 예, 그것은 편의주의로 합시다. 그래서 1조를 우리가 합의물 봤습니다.

남(송영대) : 좋습니다.

북(손종철) : 그러니까 지금 이 합의서 제목, 전문, 그 다음에 1장 제목, 1조 제목, 정확히 이걸 문안정리가 됐습니다.

남(송영대) :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넘어가서... 8항입니다.

북(김채성) : 그쪽에 5항 그거 합의되지 않겠어요?

남(송영대) : 이게 이제 우리측 5항하고 귀측 4항하고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손종철) : 이제 우리 4항을 이거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로 잡았어요.

남(송영대) : 그러면 이렇게 하죠. 우리측 5항하고 귀측 4항은 거의 같으니까 이걸 한번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귀측 5항은 좀 남겨 놓읍시다. 뭐 우리측에 없는 거니까...

북(손종철) : 우리측 4항, 귀측 5항... 여기서 지금 차이가 교류물자, 물자 거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거래에서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측은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여기서 차이는 뭐냐? 『물자거래에서 가격』이란 거하고 귀측은 『교류물자의 가격』요 문제하고, 우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했는데 귀측은 『합의하여 결정한다.』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송선생 어떻습니까? 『물자거래에서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송영대) : 저희는 말이죠, 요앞에 지금, 여기 본문도 말이죠, 전부 물자교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항 첫 도입부분도 『교류물자의 가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고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북(김채성) : 그렇게 하면 이거 길게 넘기지 말고 내 생각 같아서 『교류물자』라고 하고 뒷부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합의하면 이진 다 되는 것이니까 『결정한다.』 이렇게 할 필요없이 『협의하여 정한다.』요건 우리 표현대로 하고...

남(송영대) : 그러니까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는거죠?

북(손종철) : 예.

남(송영대) : 그렇게 합시다.

남(김태연) : 잠깐만... 뭐 같은 내용인데, 이러나 저러나 뭐 같은 내용인데, 교류물자의 가격이라고 합의를 한 바 있는 그 다음에 물자교류당사자간 하는 게 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당사자간 이리지 말고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합시다.

북(손종철) : 그렇게 합시다, 예.

남(송영대) :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측 8항하고 귀측 9항...

북(김채성) : 6항은 안하겠어요? 6항...

남(송영대) : 이건 조금 내용상의 토론할 부분이 있습니다.

북(김채성) : 아니, 다른 거 뭐 없는데... 우리 6항하고 그쪽의 6항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남(송영대) : 여기 말이죠, 우리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그쪽은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차이가 있고...

북(김채성) : 아니, 원칙으로 한다는 거나 기본으로 한다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는가?

남(송영대) : 또 귀측안은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 거래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귀측에서 후반부는 말이죠, 하나의 예외조항으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측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하고 귀측의 표현하고는 조금 어떤 감의...

북(김채성) : 같지... 원칙으로 한다는 거나 무슨 기본으로 한다는 거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

남(김태연) : 우리가 보긴 이렇습니다. 『원칙으로 하며』하고 『기본으로 하면서』하고는 뭐 같은 의미인데, 약간 의미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나오는 쌍방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다른 결제방식으로 하느냐, 쌍방의 합의에 따라서 다른 결제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좀 다르다 이런 애깁니다.

쌍방 거래당사자라 하면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 애기고,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하면 그 범위를 달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손종철) : 쌍방이란 것은...

남(김태연) : 쌍방은 공동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결제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애깁니다.

북(김승국) : 기본적으로는 공동위원회가 가격문제를...

남(김태연) : 아니 결제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건 결제방식...

북(김승국) : 결제방식도 역시 거래당사자들이 정확하지, 공동위원회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남(김태연) : 그러니까 그것까지 배제하지 않고 여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산결제방식을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공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다른 결제방식을 정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이런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분과위원회에서도 뭐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폭을 넓히자 하는 애깁니다.

북(김승국) : 그런데 이거 결제방식문제는 분과위원회의 문제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래당사자의 문제지 분과위원회, 아니 공동위원회의 문제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남(김태연) : 그러면 청산결제방식은 왜 여기서 하자고 그러니까?

북(김승국) : 아, 여기서 규정해 줘서 거래당사자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하자...

남(김태연) : 청산결제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북(손종철) : 그럼.

남(김태연) : 그러면 청산결제방식과 대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에요. 청산결제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산결제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정하면서 다른 결제방식은 또 왜 꼭 거래당사자간에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쌍방 합의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어디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김채성) : 그러니까 경제거래라는 게 거래당사자들이 호상간에 계약을 하고 합의를 맺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양자간에는 이 물자교류에서 청산결제를 하지 말고 다른 결제를 하자, 이렇게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을 구태여 청산결제로 하겠다, 이렇게는 또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주자 해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북(손종철) : 그러니까 차라리 거래당사자들이 기타 다른 필요에 따라서 결제방식을 할 때는 그 당사자들의 요구대로 해 주자...

북(김채성) : 그럼,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렇게 해 주었다고.

북(손종철) : 말하자면 더 자유롭게 해 주자 이거지. 이것까지 또 이렇게 놓으면, 아 이거 어디 거래당사자들만 하느냐, 위에서 틀어쥐고 좀 해 보자, 이렇게도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거래당사자들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남(송영대) : 그러면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으로 한다 하는 개념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북(손종철) :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남(송영대) : 흐려질 수가 있어요.

북(손종철) : 흐려진다?

남(송영대) : 앞으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거래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 해 놓으면 원칙이 흐려진다는 것.

북(김채성) :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고 다르게 다 한다, 다른 결제방식을 다 쓴다...

남(송영대) : 이것은 좀 생각해야 하니까,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

북(손종철) : 그럼 놔 두시고...

북(김채성) : 그렇게 합시다.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북(손종철) : 그 다음에 9조...

남(송영대) : 아니, 우리측 8항하고 귀측 9항...

북(김채성) : 그저 여기는 『아니하며』하고 『않으며』하고...

북(손종철) : 이 『아니하며』를 거기서 많이 씁니까?

남(송영대) : 많이 써요.

북(손종철) : 일반적으로 언어상에서도 써요?

남(김태연) : 법조문에서 이렇게...

북(손종철) : 우리는 법조문도 그렇고 『않으며』 문법적으로 명백합니다.

남(신현웅) : 편의적으로 쓰면 어때요? 편의적으로...

북(손종철) : 그런데 뭐 편의적으로 할 만한 것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편의적으로 다 쓴다면 어디...

북(김승국) : 그저 『않으며』 합시다.

북(손종철) : 그럼, 『않으며』 좋지 않아요?

남(김태연) : 우리는 법조문에서 『않으며』라고 쓰는 법이 없어요.

북(손종철) : 그러니까 귀측 법조문은 그렇다 치고 우리하고 합의보는 것이니까...

남(김태연) : 그 합의하는데 우리 법조문에 맞는 스타일로...

북(손종철) : 그런데 우리는 법조문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로, 서로 다 아는 흔히 쓰는 용어로 쓰자. 그러려면 『않으며』가 자연스럽다 이거지.

남(김태연) : 뜻은 같으니까 결국은 편의주의로 하는 수밖에 없겠군.

북(김승국) : 그런데 편의주의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술한 조문이 다를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김채성) : 그런데 『북남기본합의서』 2조에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아니한다.』 하지 않고 『않는다.』 이렇게 했던 말이에요.

북(손종철) : 그럼.

남(신현웅) : 『간섭하지 아니한다.』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2조, 3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김채성) : 거기는 그렇게 썼어요?

남(신현웅) : 예, 한번 보세요.

북(김채성) : 『간섭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남(신현웅) : 예, 2조가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북(김채성) : 우리는 『간섭하지 않는다.』

남(신현웅) :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쓴 것이에요.

남(송영대) : 편의적으로 합시다. 실제 운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없어요.

남(신현웅) : 2조, 3조, 4조가 다 그래요.

북(김채성) : 합의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 뭐...

북(손종철) : 그렇게 합시다.

남(송영대) : 아니, 지금 경제교류·협력, 협력·교류도 편의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남(신현웅) : 그래 그렇게 해서 합의된 것으로 합시다.

북(김채성) : 그렇게 합의해야지, 방법이 없지. 『기본합의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송영대) : 이것은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북(김채성) : 그러면 그렇게 합의되었습니다.

북(손종철) : 그래서 우리의 9항, 귀측의 8항, 이것은 문안정리됐습니다.

남(송영대) : 다음에는 우리측 9항하고 귀측의 11항도 일치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측 안에는 『통계』하고 『통계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귀측 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북(손종철) : 예.

남(송영대) :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교류·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측의 경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나 『통계기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통계가 작성되느냐 하는 『기준』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귀측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손종철) : 그래서, 우리 의견은 앞에 『필요한 각종 자료』라는 술어가 있어요. 『필요한 각종 자료』 이거면 되지 않겠느냐?

북(김채성) : 『각종 자료』하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북(손종철) : 이걸 『자료』가 아니고 그럼 다른 것이냐? 그래 우리도 이것 검토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공업규격도 다 『각종 자료』에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상호 교환하자...

남(송영대) : 손선생, 아까 모두에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내용문안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본자세를 갖자, 하나는 『기본합의서』를 존중하자, 또 하나는 『부속합의서』의 내용은 선언적이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구체적으로 한다는 뜻을 좀 살려 가지고 이렇게 『각종 자료』라고 하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통계』, 『통계기준』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손종철) : 『각종 자료』하면 막연하지 않죠. 대단히 포괄했죠.

남(송영대) : 막연하죠. 너무 포괄적이야.

북(손종철) : 그러니까 이외에도 필요하면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계 및 통계기준』... 사실 이 『통계기준』이라 하는 것은 귀측 사전에도 없더만.

남(김태연) : 『통계기준』이 왜 없어요?

북(손종철) : 없어요. 우리가 본 사전에는 없는데, 원래 통계학적으로도 이런 술어들을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남(김태연) : 아나, 그것은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제교류와 협력을 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러한 상호간에 차이가 나는 규격과 통계와... 이런 것이 다 기본입니다.

북(손종철) : 그런데 통계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김태연) : 통계기준이라는 것이 다 있죠. 예를 들면 물가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를 드는데, 도매물가는 몇 가지 품목을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낸다, 기술적인 문제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말하자면 그게 무슨 라스파레스식이다 파레스식이다 하는

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통계를 내는 방식, 소비자물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기준에 입각해서 한다, 예를 들면 지금 물가지수가 150이다 하면 그것은 1985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이 150이 됐다, 이렇게 기준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상호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북(손종철) : 그러니까 통계작성방법, 그 다음에 단위, 통계지표, 이런 것이죠?

남(김태연) : 그런 거죠.

북(손종철) : 그러니까 이것은 『각종 자료』라 하면 다 포괄되는 것입니다.

남(김태연) :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막연합니다.

북(손종철) : 또 따로 내놓으면 『각종 자료』는 무엇이며, 이것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된다 말이죠.

남(송영대) : 이것은 우리 김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측의 경제실태를 파악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이에요.

북(손종철) : 그런데 이 문장구성상 보면 『필요한 각종 자료』 그리고 『통계, 통계기준, 공업규격』 하니까 그럼 위에 있는 『필요한 각종 자료』는 무엇이며, 아랫 것은 무엇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다 포괄하자...

남(김태연) : 경제교류를 하려면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필요한 자료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예시로 하고... 오히려 그렇다면 『통계 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을 비롯한 필요한 각종 자료』라든지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다 이런 이야기이고,

북(손종철) :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해 봅시다. 그 다음에...

남(송영대) :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측 안 10항하고 귀측 안 12항하고 일치되지요? 다만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 귀측 안에 보면 『자본이동』 표현이 있지요? 우리측은 7항에 『대금결제』와 함께 『자본의 이동』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북(손종철) : 예.

남(김태연) : 그런데 우선 귀측의 12항에 『자본의 이동』을 여기다 넣은 취지가 뭐니까?

북(손종철) : 이것은 사실은, 귀측의 안을 받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의 이동』이라는 이러한 술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귀측의 안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투자보장』, 그리고 『자본의 이동』... 이런 것을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남(김태연) : 그렇다면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우리가 지금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이 이 항목인데, 이것은 우리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 어느 나라하고나 다 경제 협력을 할 때는 이런 조항을 갖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이 세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본의 이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입장을 수용해서 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자본의 이동이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북(김채성) : 귀측이 결제문제에서 자본의 이동문제를 제기한 것도 역시 맞지 않습니다. 결제방식문제에서 자본의 이동문제를 거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뺍시다.

남(김태연) : 그러면 그것은 어디, 몇조...

북(손종철) : 귀측의 7항...

남(김태연) : 그건 어차피 다시 논의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북(손종철) :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산결제은행 지정하고 한다는 여기에서 이 자본이동이란 것이 들어간 것이 맞지 않는다. 대금결제에서 ... 그러니까 빼려면 이것하고 함께 빼자.

남(송영대) : 그러니까 자본의 이동을 거기서 빼가지고 우리측 7항으로 끼워 넣자 이런...

남(김태연) : 아니 저쪽에서는...

남(송영대) : 7항에서도 빼고 양쪽 다 빼자?

북(김채성) : 난 그것 필요없다고 봅니다. 7항에도 자본의 이동에 관해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정한다, 또 우리가 내놓은 12항에도 쌍방이 합의해서 정한다, 이것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남(김태연) : 그러니까 7항은 어차피 우리가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빼야 되는 것이 옳다면 빼는 거고 그대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논의가 되면 두는데...

북(손종철) : 아니, 여기서도 명백해요.

남(김태연) :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완전히 합치 안되는 것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북(손종철) : 그러면 이 문제도... 10항, 12항도 넘깁시다.

남(송영대) :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자본의 이동문제는 7항 토의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남(신현웅) : 그것 제외하고는 합의된 거죠. 그것만 빼고...

북(손종철) : 그때 다시 토론한다, 여기는 아직 합의본 걸로 하지 말고...
오늘은 문안정리입니다.

남(송영대) : 그러니까 우리측 10항하고 귀측 12항은 오늘은 일단 유보입니다.

북(손종철) : 예, 류보.

남(송영대) : 그 다음에 우리측 11항하고 귀측 13항... 그건 뭐 전적으로 일치되네요. 한번 읽어 봅시다. 『남과 북은(귀측은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전적으로 일치하죠?

북(김채성) : 예,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북(손종철) : 자, 그래서 우리 13항, 귀측 11항은 문안정리됐습니다.

남(송영대) : 그 다음에 우리측 12항하고 귀측 14항, 이것도 표현상의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일치됩니다. 우리측에서는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귀측에서는 경제라는 말이 없이 그냥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거죠?

북(손종철) : 그렇죠, 그것 차이납니다.

남(송영대) : 이거 뭐 분명하게 하는 뜻에서 『경제』 집어 넣죠?

북(손종철) : 아니 그러니까 공동위원회가 경제공동위원회가 아니죠, 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죠.

남(김태연) : 그것은요 결국은 뻔한 얘긴데, 우리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할 사항이 1조 2항인데, 1조 2항을 아직 논의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텐데, 1조 2항에 이리이러한 『대상과 형식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라 함)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서 받을 때 경제공동위원회라고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논의할 때에 약칭을 붙였으면 붙인 대로, 아니면 그대로 붙이는 걸로...

북(김채성) : 약칭 붙일 필요없어요. 1장은 어차피 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

남(김태연) : 아니 그런데 공동위원회도 뭐 좋습니다만 나중에 우리측 1조 2항을 논의할 때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무슨 약칭이 되면 그것을 다시 여기에 옮겨서...

북(김승국) : 그 조항목도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남(송영대) :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희로서는 1조 2항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라고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에요, 우선 모양으로 봐도 말이죠,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1조 2항 협의할 때 경제공동위원회로 약칭을 쓰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여기는 그냥

공동위원회로 두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북(손종철) : 태연선생, 마지막에, 우리 지금 제일 마지막에 리행기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다 모아서 리행기구 누릅니다. 이상의 것은 경제
협력·교류공동위원회에서 한다...

남(김태연) : 글썄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공동위원회라고
한다고 해서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무슨 사회
·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할 리도 없고 당연한데, 1조 2항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논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에 뭐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애
기가 분명하게 된다 이겁니다.

남(송영대) : 이것은 유보합시다.

북(손종철) : 태연선생, 1조 2항을 보는 것보다 우리는 제일 뒤에 가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은 다 되니까...

남(송영대)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2항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예요. 유보합시다.

북(손종철) : 그런데 2항인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것 할 때 다 할 수 있
어요.

남(송영대) : 다음에 제2조, 이건 뭐 일치됩니다. 똑같죠?

북(손종철) : 그래서 『제2조 북과 남은(그쪽에서는 남과 북은) 과학, 기
술, 환경분야에서 협력·교류를 실현한다.』

남(송영대) : 여기서 이제 『의』하고 『에서』차이인데... 그렇죠?

북(김승국) : 『분야에서』한 것은 기본합의서가 다 『분야에서』이랬단 말이
예요. 16조에서 떼은 것이기 때문에...

남(송영대) : 16조... 좋습니다. 『에서』로 합시다.

북(김채성) : 그 『실시한다』로 돼 있어, 『실현한다』로 돼 있어? 우리는 실
현한다로 돼 있는데...

남(김태연) : 우리는 실시한다로 되어 있어요.

남(신현웅) : 이것은 16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북(손종철) : 16조대로 하자요.

남(신현웅) : 16조는 실시한다, 17조는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손종철) : 우리는 다 실현한다로 돼 있어요.

남(송영대) : 그러니까 지금 대원칙이 주문은 기본합의서하고 일치시킨다
고 했으니까, 『실시』로 합시다.

북(손종철) :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실현』으로 하고... 우리는 다 실현으
로 돼 있어요.

남(신현웅) : 아니 16조가 실시고, 17조가 실현 아닙니까?

북(손종철) : 아니, 그것도 실현, 17조도 실현, 그 다음에 또 쪽 내려가서
맨 실현입니다. 우리는...

남(송영대) : 그러니까 귀측 16조 본문 말미에 실현으로 되어 있어요?

북(손종철) : 그럼.

북(김승국) : 우리는 실시라고 거의 그러지 않아요.

남(송영대) : 그러면 편의주의로 합시다.

북(손종철) : 그런데 뜻을 보니까 실시는 실현보다 조금 약해요. 왜? 꿈을
실현한다, 현실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실시는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고... 좀 약하다.

남(신현웅) : 우리는 그걸 반대로 거의 쓰는 것 같아요.

북(김채성) : 기본합의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북(손종철) : 자, 그래서 이것도 합의를 봤어요. 제2조 합의...

남(송영대) : 다음에 제2조 1항, 이것도 자꾸 하나를 빼고는 거의 다 일치됩니다. 예컨대 말이죠, 우리측에서는 『관련기관과 단체』, 귀측에서는 『과학연구 기관과 단체』 이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남(김태연) : 그건 과학·기술·환경분야, 이 세 가지 분야가 쪽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연구 기관 이렇게 해서 그중에 한개만 하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다 관련기관과 단체...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북(손종철) : 이걸 앞의 그것하고는 일단 다르지 않아요? 환경분야에서의 정보자료의 교환, 그 다음에 이제 연구란 말예요. 과학연구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남(김태연) : 아니 그게 아니고 과학·기술·환경분야에서의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기술·환경분야 연구기관과 단체, 과학·기술·환경분야 인원들 사이의 공동행위... 이런 뜻이란 말예요.

북(손종철) : 예, 그렇죠.

남(김태연) : 그렇다면 과학연구 기관이라고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환경 세 분야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관련기관이라고 우리측 안대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애깁니다.

남(송영대) : 과학이라고 해 놓으면 너무 제한적인 인상을 준다 이겁니다.

남(신현웅) : 위원들끼리는 서로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혹시 해석상의 문

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북(김승국) : 그 지금 새로 수정한 겁니까?

남(송영대) : 관련기관과 단체...

북(김승국) : 『환경분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거기다 관련이 더 필요없어요. 『...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연구 기관과 단체, 인원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북(김채성) :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관련이라는 것도 빼버리고 과학도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그저 『연구기관』이라고 하죠 뭐. 앞에 과학·기술·환경분야 이게 찍혀 있으니까 과학도 빼버리고 관련이라는 것도 빼버리고 『연구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북(손종철) : 다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지.

남(신현웅) : 연구하지 않고 실지로 과학이든지 기술을 담당하는 기구나 기관끼리의 협력도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북(김채성) : 아니 연구니까, 이건 공동연구, 조사니까...

북(손종철) : 과학·기술·환경분야에 대한 과학연구죠. 기관·단체·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조사... 그 밑은 뭐 다 같으니까...

남(김태연) : 단체란 게 뭐니까? 단체... 단체는 무엇을 거기서 생각해서 한 겁니까?

북(손종철) : 과학연구기관...

북(김채성) : 연구기관이 아닌...

북(김승국) : 기관은 상설적인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단체는 그 분야의 사회적 인원들이 망라된 그런 사회적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갈라져야 된다고...

북(김채성) : 귀측도 그건 내놓은 건데...

북(손종철) : 원래 귀측에서 내놓은 거예요.

남(김태연) : 아니, 우선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거예요.

북(김채성) :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아닌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남(김태연) :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아닌 단체도 공동연구와 조사를 하자 하는 뜻이라면 이것을 연구기관이라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러면 과학연구기관에서 과학만 떼 『연구기관과 단체』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관련기관과 단체』 우리 안대로 하면 거기서 무슨 연구만 하는 기관도 포함될 수 있고 연구 아닌 기관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북(김채성) : 관련기관이란 표현을 우리는 지금 안쓴다 말이에요. 관련기관...

남(송영대) : 관련이란 말이 좀 거부감이 있어서 그래요?

남(김태연) : 하여튼 과학과 기술과 환경분야하고 관련되는 기관들이 다 할 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김채성) : 우린 『해당기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련기관』 이런 표현은 잘 안쓴다 말이에요.

남(송영대) : 그러면 이걸...

북(김채성) : 해당기관이라 하면 언제?

남(송영대) : 해당?

북(김채성) : 그것도 같은 소린데, 우린 관련이란 표현을 그렇게 안쓴단 말이야...

남(김태연) : 해당, 해당이란 건 바로 그것하고 딱맞는 걸 해당이라 그러고, 관련은 그 업무하고 다소간에 연관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북(김채성) : 아니,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 법조문에 그렇게 관련이란 것이 나간 게 없어요.

남(송영대) : 그러면 이런 대안은 어때요? 관련이란 말이 안좋으면 『과학, 기술, 환경 기관과 단체』 이런 식으로...

북(김채성·김승국) : 그걸 또 반복을 해요? 반복이 된다고...

남(신현웅) : 관련이란 게 앞에 있는 걸 받아서 중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명확하지 않을까요?

북(김승국) : 그저 과학자만 빼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환, 그 다음에 연구기관과 단체, 그랬으면... 과학, 기술, 환경은 분야이니까, 그 분야니까... 그리고 연구기관이 기본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북(김채성) : 그럼, 공동연구·조사니까...

남(김태연) : 그러면 대학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대학이 연구기관입니까?

북(김승국) : 큰 의미에서 대학이 연구기관에 다 포괄될 수 있지요. 과학

연구기관 하면 전문과학연구소들도 들어갈 수 있고 대학들에 역시 많은 과학연구기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남(신현웅) : 그런데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들 중에 연구라는 이름을 안편 것도 아마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로 우리가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는 게... 이걸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건데, 조금 우리가 폭을 융통성 있게 넓혀 놓는 게 나중에 해석하기에...

북(손종철) : 그것은 해당으로 합시다. 『해당연구기관과 단체』 이러면 다 되지 않겠어요? 기본이 연구기관이니까...

남(송영대) : 아니, 뒤에 또 공동연구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또 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중복되거든요.

북(김채성) : 그럼 해당기관과 단체?

북(손종철) : 해당기관과 단체, 어때?

남(김태연) : 해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는 견지에서는 아주 딱맞는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북(김승국) : 관련과 같아요. 일없어요.

남(김태연) : 아니, 우리 뜻은 해당이란 것은 100% 고것 딱 그거란 애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쓰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딱맞는 것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북(김채성) : 그러면 『50%도 해당된다』 이런 말 쓰지요 뭐(웃음)... 딱 100%만 해당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걸...

북(김승국) : 연구라는 것은 빼도 일없어요.

남(송영대) :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해당기관과 단체』로 합시다.

북(일동) : 그렇지... 좋습니다.

북(손종철) : 그러면 2조 1항,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 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 부문의 기술협력,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존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됐습니다.

남(송영대) : 아니, 가만... 『보전』하고 『보존』은 조금 달라요.

북(손종철) : 어떻게 됩니까?

남(송영대) : 보전은 보존을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북(손종철) : 그러니까 어떻게 포괄하고 있어요? 환경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김태연) : 거기서는 환경보존이라는 말을 씁니까?

북(손종철) : 씁니다.

남(송영대) : 그러니까 보전이라고 하는 뜻은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북(손종철) : 그 전자 아닙니다. 안전 전자예요, 보전할 때(웃음)...

남(김태연) : 아니, 아니... 그 발전시킨다는 뜻보다도 보호하고 완전하게 해 나간다...

북(손종철) : 안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남(김태연) : 완전하게 해 나간다...

북(손종철) : 아니, 안전하게...

남(김태연) : 아니 보전이라는 뜻은...

북(손종철) : 아니, 내 얘기합시다.

남(김태연) : 아니,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전이란...

북(손종철) : 귀족의 국어대사전 이승희(이희승?)박사가 쓴 거기에 보전은 보존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차이 없어요.

남(김태연) : 아니 뜻은 뭐 마찬가지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뜻이고...

북(손종철) :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보존, 보전을 다 없애고 보호로 합시다. 보호, 환경보호... 그럼 아주 좋지요. 환경을 보호해...

남(송영대) : 그것은 조금 다른데...

북(손종철) : 환경보호하고 하면 그건...

북(김승국) :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보호 떠들고 있는데 뭐...

남(송영대) : 그럼 이렇게 하지요. 양쪽 안을 절충해서 『환경보전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이렇게 합시다.

북(손종철) : 아니 그런데 이 보전이란 것 이거...

남(송영대) : 뭐가 문제가 있어요?

북(손종철) : 보호로 합시다, 보호로.

북(김승국) : 의미는 리행에서는 같습니다. 리행에서는 같은데, 표현문제인데...

남(송영대) :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근접돼 있는데 구태여 제3의 용어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북(손종철) : 왜 그런가? 우리는 이 보존을 많이 씁니다. 귀족에서는 보

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럴 때에는 제일 절충된 게 보호가 좋습니다. 환경보호...

북(김승국) : 환경보호대책 일없지요, 뭐...

북(손종철) : 그래서 보호로 합시다.

남(송영대) : 보호는 우리로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북(손종철) : 그런데 거기서는 환경을 보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송영대) : 아니, 우리는 주로 보전...

남(신현웅) : 환경보호할 적에는 선언적이고 막연한 걸 보호한다...

북(손종철) : 신선생동무, 아주 선언적인 설명을 했구만(웃음)...

남(송영대) : 이거 절충을 냈지 않았어요. 보전으로 쓰고 세운다는 귀족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보전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이렇게 하자구요.

북(손종철) : 보호 합시다, 보호... 보호, 왜 반대를 해요? 우리도 지금 새롭게 내놨는데... 귀족도 보호... 이렇게 하고서 대책을 세운다, 환경보호대책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남(김태연) : 글썽 그런데 뭐 뜻은 거기서 거기로 큰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보호라는 것은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법조문이나 이런 데서는, 법률적 용어나 행정용어 이런 데서는 환경보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보전이란 뜻은 우리 사전을 보고 오셨다니까, 뭐 나는 안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환경에만 보전을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분야에 보전이란 말을 쓰는데, 보전이란 뜻은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무슨 보호하고 안전하다 했는데 그 뜻보다는 보호하고 더 완전한 쪽으로 가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갖는 개념은 그런 뜻이라고요.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 쓸 때도 그런 쪽으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보호하면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에 가까운 쪽이고...

북(손종철) : 아니죠. 환경보호할 때는 그야말로 깨끗한 환경을 보호하도록 오염이 방지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남(김태연) : 글썄, 지금 있는 상태를 좀더 나빠지지 않게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 이거예요.

북(손종철) : 아니, 보호를 귀측에선 그렇게 리해해요?

남(김태연) : 아니, 환경보호다 보존이라 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환경을 그런 수준으로 더 나빠지지 않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강하게 들리는데, 보전이다 하면 지금 현재보다 더 낮게, 좋게 하자는 쪽의 의미가 가미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이겁니다.

북(손종철) :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쪽에서 리해가 그렇고 우리 리해가 그런 조건에서 또 보호란 말은 우리도 쓰고 거기도 쓴다니까, 그러면 같이 쓰는 말 보호로 해요.

남(송영대) :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절충안을 낼게요. 이것 편의주의로 합시다.

북(일동) : 편의주의? 뭐 이것 가지고... 똑같은...

남(송영대) : 아니 괜찮아. 대세에 지장없어. 그렇게 하세요.

남(신현웅) : 뭐 실시나 실현이나 보전이나 보호나...

북(손종철) : 그래서 이것도 미결이다.

남(송영대) : 미결이에요? 아, 이것 가지고 미결이에요?

북(김승국) : 이거 편의주의로 다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뭐...

남(송영대) : 아니 실시, 실현도 편의주의로 쓰는데 뭐...

북(손종철·김승국) : 그거야 전례가 있으니까, 기본합의서도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야 될수록 통일되어야지, 법조문 이것을 또 기준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지. 왜 그런가? 우리하고 대상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편의하게 간명하게 많이 쓰는 수로 명백하게 이런 걸로 합시다.

남(김태연) : 이걸 편의주의로 하십시오.

북(손종철) : 아직 봐 둥시다.

남(송영대) : 그래요?

북(손종철) : 넘깁시다.

남(송영대) :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걸 유보입니다.

북(손종철) : 예, 류보. 그 다음에 2조 2항...

남(송영대) : 이걸 뭐 내용, 표현이 다 일치됩니다.

북(김채성) : 거기 『의』자 하나 더 들어갔어요. 『상대측의...』

남(송영대) : 한번 읽어봅시다. 『남과 북은(그쪽은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 여기서 우리는 점이 하나 있고 그쪽은 점이 없어요. 그렇죠?

북(김채성) : 그것은 관계없어요.

남(송영대) :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물 취한다.』

북(김채성) : 상대측의, 상대측, 그저 요 차이인데...

남(송영대) : 이거 뭐 『의』가 더 정확하지 않아요?

북(손종철) : 그런데 이거 보시오.

남(송영대) : 이거 소유개념인데...

북(손종철) : 좀 가만있어요. 상대측의 과학기술상의 권리, 그러면 『의』가 또 둘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남(송영대) : 그러면 좋습니다. 『의』 뺍시다.

남(김태연) : 그런데 귀측에서 『과학기술상』 하는데, 과학기술 한 마디로 한 단어로 거기서는 쓰고 있는 겁니까?

북(김채성) : 우리는 가운데점이 있는 문법이 없다고...

남(김태연) : 아니 하여튼 우선 개념이 과학기술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김채성) : 두 가지 다 이야기해요.

남(김태연) : 그러면 밑에 찍든지, 가운데 찍든지 뭘 찍어야 될 거 아녜요?

남(송영대) : 그리고 우리 본문도 전부 과학·기술 점 찍었어요.

남(김태연) :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설치·운영한다.』 기본합의서 같은 데도 보면 말이죠,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이럴 때도 가운데점을 찍고 다 찍는데...

북(손종철) : 자, 그럼 찍자.

남(김태연) : 가운데점을 찍읍시다.

남(송영대) : 저 16조 본문 보세요.

북(김채성) : 그건 가운데 찍어야 되는데 문법이 그러니까...

남(신현웅·송영대) : 찍은 게 있어요. 점이 있어요.

북(손종철) : 보통 지금 그렇게 쓰지...

남(신현웅) : 기본합의서 제16조 맨 앞에 남과 북은 과학·기술 하는 데 사이에 점이 있어요.

북(김채성) : 거기는 점이 있고 우리는 점이 없고 그렇지. 우리는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가운데점이 있는 건 없으니까.

남(송영대) : 있어요. 거기도 점 있는 겁니다.

북(손종철) : 그런데 요기가... 아, 가운데점을 쳤어요?

남(송영대) : 예, 과학 하고 점 기술...

북(손종철) :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없어요.

북(김채성) : 글썬 그게 없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건...

북(손종철) : 그래서 치면 과학 밑에다가 박점을 찍어줘요, 캄마...

남(송영대) : 캄마를?

남(김태연) : 아니, 거기는 기본합의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북(손종철) :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남(송영대) : 우리는 가운데점이 있는데...

북(김승국) : 우리는 가운데점이 있는 법이 없어요.

북(손종철) : 우리 문법이 그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캄마로 돼 있어.

남(송영대) : 그건 뭐 편의하게 합시다.

북(손종철) : 그래 캄마로 합시다.

남(송영대) : 우리는 가운데점 찍고 그쪽은 캄마로 하고...

북(손종철) : 자, 그럼 요건 됐어요.

남(송영대) : 다음 제3조...

북(손종철) : 가만 다시, 수원동무들 잘 들으라요. 2항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자, 그러니까 요건 됐습니다.

남(송영대) : 됐어요. 3조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다 같고 향로나, 공로나?

북(손종철) : 3조?

남(송영대) : 예, 3조 본문인데요. 다 같고 19조를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북(손종철) : 그렇죠.

남(송영대) : 그러니까 우리는 향로로 표시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공로로 표현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예요? 우리는 기본합의서 19조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북(손종철) : 우리가 이거 왜 그랬는가? 뱃길도 향로라 하고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로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남(송영대) : 자, 목 좀 축이고 합시다.

남(김태연) : 그런데 거긴 기본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북(일동) : 향로로 되어 있습니다.

남(김태연) : 그럼 향로로 맞추시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맞추는데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공로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면 또 다른

뜻으로 생각된다고요.

지금 귀측에선 『항공』이다, 하늘이란 『공』자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쪽에선 공로라고 하면 사도가 아니고 공로, 그런 의미로 쓰는 말도 있기 때문에...

북(손종철·김채성) : 좋습니다... 사적인 공적인... 좌우간 말이 너무 풍부해서... 조선말의 우월성이...

남(송영대) : 자, 그럼 이진 항로로 합니다. 다시 읽어 보면 『제3조 남과 북은(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합의된 겁니다.

북(김승국) : 해로, 항로 이렇게 점이 있습니까? 거기...

남(송영대) : 우리는 밑에 캄마가 있어요, 캄마.

북(김승국) : 우리는 지금 『해로와 항로를 개설한다.』 이랬는데...

북(손종철) : 연결하고 해로와 항로...

남(송영대) : 기본합의서 19조 본문에 그대로 돼 있어요. 캄마가 있어요.

북(손종철) : ...그러면 거기다 맞춰야지.

남(송영대) : 자, 이진 합의된 겁니다.

북(손종철) : 그럼.

남(송영대) : 그 다음에 제3조 1항, 이것도 거의 일치되고 있는데 포항이냐, 부산이냐 요 차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포항으로 내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항이 물량이 넘쳐 가지고 배가 입항을 하려고 하면 며칠씩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을 고려할

북(손종철) : 자, 그럼 요건 됐어요.

남(송영대) : 다음 제3조...

북(손종철) : 가만 다시, 수원동무들 잘 들으라요. 2항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자, 그러니까 요건 됐습니다.

남(송영대) : 됐어요. 3조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다 같고 항로나, 공로냐?

북(손종철) : 3조?

남(송영대) : 예, 3조 본문인데요. 다 같고 19조를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북(손종철) : 그렇죠.

남(송영대) : 그러니까 우리는 항로로 표시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공로로 표현하고 있는 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예요? 우리는 기본합의서 19조에 나와 있는 용어를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거예요.

북(손종철) : 우리가 이거 왜 그랬는가? 뱃길도 항로라 하고 그러니까 혼돈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로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서...

남(송영대) : 자, 목 좀 축이고 합시다.

남(김태연) : 그런데 거긴 기본합의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북(일동) : 항로로 되어 있습니다.

남(김태연) : 그럼 항로로 맞추시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그렇게 맞추는데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거고, 공로라고 이렇게 한글로 쓰면 또 다른

뜻으로 생각된다고요.

지금 귀측에선 『항공』이다, 하늘이란 『공』자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쪽에선 공로라고 하면 사도가 아니고 공로, 그런 의미로 쓰는 말도 있기 때문에...

북(손종철·김채성) : 좋습니다... 사적인 공적인... 좌우간 말이 너무 풍부 해서... 조선말의 우월성이...

남(송영대) : 자, 그럼 이젠 항로로 합니다. 다시 읽어 보면 『제3조 남과 북은(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합의된 겁니다.

북(김승국) : 해로, 항로 이렇게 점이 있습니까? 거기...

남(송영대) : 우리는 밑에 감마가 있어요, 감마.

북(김승국) : 우리는 지금 『해로와 항로를 개설한다.』 이랬는데...

북(손종철) : 연결하고 해로와 항로...

남(송영대) : 기본합의서 19조 본문에 그대로 돼 있어요. 감마가 있어요.

북(손종철) : ...그러면 거기다 맞춰야지.

남(송영대) : 자, 이젠 합의된 겁니다.

북(손종철) : 그럼.

남(송영대) : 그 다음에 제3조 1항, 이것도 거의 일치되고 있는데 포항이냐, 부산이냐 요 차이죠.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기 포항으로 내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항이 물량이 넘쳐 가지고 배가 입항을 하려고 하면 며칠씩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정을 고려를

해 가지고 부산항보다는 편리한 포항항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거 내놓은 거예요.

북(손종철) :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내용조정인데, 우리 권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장들에게 넘깁시다.

남(송영대) : 아니 손선생,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지요.(웃음)

북(손종철) : 그래서 우리는 바로 또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을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 교류가 강화되고 이러면 물동량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항하고 연결을 가져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아시고...

남(송영대) : 이 문제는 우리도 앞으로 많은 교역량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고 그런 우리측 항구사정은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측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북(손종철) : 그런데 그쪽의 경제인은 또 부산항이 아주 편리하고 물동도 많고... 거기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환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큰 항구하고 할 바에는 뭐 큼직하게 하지, 그거 뭐(웃음)...

남(송영대) : 어느 경제인이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여기 우리 김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북(손종철) : 아니 그쪽이야 정치에서도 매스컴들을 이쪽 민간은 뭐 다치지 못한다고 헌법에 돼 있다고 그러던데, 정치에서... 그런데 뭐 여기 김선생이 어떻게 그런 것 다 다치겠어요?

남(김태연) : 뭘 다쳐요?

북(손종철) :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남(김태연) : 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알기 때
문에...

북(김승국) : 그래서 항이 긴장하다는 그 리유 하나뿐입니까?

남(송영대) : 지금 물동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북(김승국) : 그것은 맞지 않고, 그렇게만 제시하면 맞지 않고...

남(송영대) : 지금 귀측에선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그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김태연) : 그런 것은 없고 내가 한 마디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교류·협
력하는 데는 가급적... 경제원칙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원칙이
뭐냐? 가장 작은 경비를 들여서, 적은 경비를 들여서 큰 효과를 얻자
는 게 경제원칙의 제1조거든요. 제일 첫째 원칙이 그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물동량이 많아서 배를 부리거나 싣거나 오래 걸려야 될
이런 거는 그만큼 채선료라든지 돈이 많이 든다고요.

북(일동) : 아니 남북간의 교류인데 다른 것 좀 미루고 우선 제각제각 해
야지, 다른 나라 배들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뭐 우리 보고 기다
리랄 것 있어. 다른 것 좀 밀치고 우리 좀, 자 이건 민족 자체 내부교
류이기 때문에 제일 특례로 한다, 먼저 한다, 이렇게 척 들어가야...

남(송영대) : 자 이건 아까 손선생이 위원장접촉에 넘기자고 그랬으니까
넘김시다.

북(손종철) : 자 그럼 요것도 또 그렇게 되고...

남(송영대) :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측 2항하고 귀측 4항하고 또 내용이
뭐 거의 일치합니다. 임시교통로 조항인데, 지금 두 가지 차이가 있어

요. 하나는 우선 항의 배열순서를 우리는 지금 2항에 놓고 있고, 귀측은 지금 4항으로 놓고 있죠? 그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내용면에서 우리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라고 쓰고 있고 그쪽에서는 『물자교류와 인원래왕』, 이게 차이예요.

북(김채성) : 그 순서 바꿔놓은 게 다른 거죠,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원왕래¹과 물자교류』 이렇게 보는가, 『물자교류와 인원래왕』이라고 하는가?

남(송영대) :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임시교통로항을 2항에 배열시킨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항이 우선 해로 두 군데 개설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6차 때 토의한 바로는 임시교통로 개설도 1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1항에 이어서 2항에 임시교통로를 두는 것이 위치가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북(김채성) : 그건 시간적인 순서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항배열한 순서를 말하면 우선 기본 개설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개설되기 전에는 임시교통로를 개설한다 해서 그 뒤에다 놓고... 뭐 그거 놓는 거는 논리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봐요.

북(손종철) : 그리고 일단 순차를 아직 여기서는 놔둡시다. 그래서 요 조항들 놓고... 그래서 문안정리되고 그 다음 또 그거...

남(송영대) : 그러니까 배열관계는 나중에... 알겠습니다.

북(손종철) : 배열관계까지 보면 자꾸 공전하게 된다고.

남(송영대) : 그럼 일단 내용만 보죠.

남(신현웅) : 물건이나 물자교류보다는 사람왕래가 조금 앞서야 인간존중이 되지 않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인원왕래를 우리는 앞에다 놓았고 물자교류가 뒤에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대로 해서 넘어갑시다.

북(손종철) :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교류와 인원래왕...

북(김승국) : 어째서 인원왕래가 더 먼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돼야지. 물자교류도 다 같이 되고 인원왕래도 다 같이 돼야지. 뭐 인원왕래가 더 앞서야 된다는 거는 뭐...

남(신현웅) : 그러니까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사람왕래가 더 존중받아야 되죠.

북(손종철) : 고칠 바에야 뭘 다 고쳐 놓지 뭘 또 그걸 바꿔 놨어요?(웃음)...

남(신현웅) : 우리는 뭐 인간존중사상이 높으니까...

남(송영대) : 지금 사람이 중심 아닙니까?

북(김승국) :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 경제협력·교류분야에 들어갔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북(손종철) : 그러니까 화물이 역시 기본이다. 경제협력·교류란 말이에요.

남(송영대) : 경제교류·협력의 주체가 인간인데 인간부터 가야지. (웃음)

북(손종철) : 주체사상을 상당히 터득하고 (웃음)... 그런데 이젠 경제장

이란 말이요. 그리고 민족구성원은 그것은 또 뒤에 나오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남(송영대) : 아니, 역으로 해석할 때 말이죠. 사람은 가지 않고 물자만 보낸다는 것은 뭐가 금방 납득이 안돼요. 사람도 가고 물자도 가는데 역시 사람이 경제행위의 주체니까 그게 앞에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지.

남(김태연) : 그게 뭐 그리 문제될 게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표현만 사람을 앞에 쓰고 물건을 뒤에 쓰자는데...

북(김채성) : 아니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또 바꿔 놓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남(송영대) : 지금 우리가 말한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북(김채성) : 경제협력·교류인데 어떻게 인원래왕이 앞에 써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따르고... 이러니까 벌써 그 순리가 맞지 않는다.

남(신현웅) : 아니 경제주체가 경제인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북(김채성) : 아, 그걸 그렇게 갖다 연결시켜서야...

남(송영대) : 아니 비근한 예로 말이에요. 이번에 귀족의 부총리 지금 왔다 갔잖아요? 우선 사람이 먼저 오고 가야지요.

북(손종철) : 그건 우리 래왕으로 봅니다. 우선 인원래왕, 민족구성원래왕... 그런데 이 장이 있다 말이지, 아래 조항에...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여기서는 경제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문제에서 귀족이 인간이 기본이라니까 (웃음)... 이게 잘 납득이 안가요.

북(김채성) : 뭐 기본이라고 해서 무슨 뭐 앞에서 놓고 기본이 아니라서

뒤에 놓고 할 필요없어. 이것 측면에 내놓은 조항인데...

남(송영대) : 이걸 좀 우리측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북(손종철) : 이제 아주 납득하기 쉽게... 경제할 때는 기본이 뭐겠습니까? 경제에서...

남(신현웅) :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죠.

북(손종철) : (웃음) 사람이 잘 살기 위한 경제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여기서는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남(김태연) : 아니 이 조항에 사람은 안들어가고 물자만 들어간다면야 논의할 게 없겠는데 한 항에, 동일한 항에 사람과 물자가 같이 얘기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다만 앞에 사람을 먼저 써주는 것을... 사람이 물건보다 못해서 뒤따라간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북(김채성) : 아니, 이게 못해서 뒤가고 무슨 그런 게 아니지. 아 대표단들 외국에 나갈 때도 실무급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진짜 투표할 사람, 거물은 마지막에 나가는데...

남(신현웅) : 자, 그럼 편의주의로 합시다. 인간을 중요시하는 우리측은 인원왕래를 앞으로 하고 물자를 중요시하는 귀측에서는...

북(김채성) : (웃음)인간은 우리가 더 중시하지.

북(손종철) : 아니, 그러지 말고 경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벌써 무리가 있다는 것을 귀측도 아시면서 이러는구만. 이 좀 경제에...

북(김승국) : 요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항도 여기 있습니다. 경제협력·교류 및 인원래왕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추가적으로 연다... 여기서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걸 잘 토론하여야 될 겁

니다.

남(송영대) : 물론 이제 그것도 연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단 우리 생각으로는 편의주의로 했으면 좋겠는데...

북(손종철) : 아니 편의주의로 하지 말고...

남(송영대) : 어렵다면 연구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측 4항하고 귀측 5항하고 이게 일치하고 있어요.

남(김태연) : 이걸 공로가 아니라 항로로 고쳐야 되겠지요?

북(손종철) : 아니 3항은 안되는가? 우리 3항... 『경제협력·교류 및 인원래왕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육로, 해로, 공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개설한다.』

북(김채성) : 그것은 저기서 없었어요.

북(손종철) : 아, 이쪽에서는 없었어요?

남(송영대) : 우리는 귀측의 2항, 3항을 합쳐서 하나로 해 가지고 3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내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토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북(김승국) : 그걸 우리 더 연구하자고...

북(손종철) : 응, 지나갑시다.

남(송영대) :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측 4항하고 귀측 5항하고 비교해 보면 내용이 일치해요. 자꾸 한개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대로 항로, 공로... 이걸 아까 합의한 대로 항로입니다.

북(손종철) : 예...

남(송영대) :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여기 이제 우리는 『항로 개설·운

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그쪽에서는 『항로 개설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지요?

북(손종철) : 예...

남(신현웅) : 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도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래
야 되는 것 같은데...

북(손종철) : 그것 그렇게 합시다.

남(송영대) : 개설 · 운영...

남(신현웅) : 넣는 게 좋습니다.

북(손종철) : 자, 그러니까 귀측 4항하고 우리 5항입니다. 이거 지금 합의
봤습니다. 『북과 남은 육로, 해로, 항로 개설, 운영의』 여기 『운영』자가
들어갔습니다.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이렇게 요거 합의봤습니다.

남(송영대) : 그 다음 넘어가서요, 우리측 5항하고 귀측 6항하고 이거
일치됩니다.

북(손종철) : 교류물자는... 우리측은 『북과 남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공로를 통해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남(김태연) : 항로를 통해, 항로...

북(손종철) : 응 그래, 요건 항로로...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
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똑같구만.

남(송영대) : 『통하여』하고 『통해』...

북(손종철) : 자 그럼 6항 『북과 남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됐습니다. 그

다음에 7항과 귀측 7항...

남(송영대) : 이것도 일치돼요. 한번 읽어 봅시다.

북(손종철) : 『북과 남은 교통로 연결과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 등을 존중한다.』 귀측에서는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운영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는 『과』자다. 『개설·운영』...

남(김태연) : 그것 뻘시다. 앞에도...

북(손종철) : 우리는 『연결과 운영』, 귀측이 『개설·운영』, 우리는 『해당』이 있고 또 『등』자가 들어갔어요.

남(송영대) : 그런데 여기 귀측 안을 보면 교통로 연결과 또 운영과... 이렇게 되니까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북(김승국) : 『교통로 연결 및 운영과 관련한...』 이러면 명백해지지.

북(손종철) : 가만있어, 교통로 연결 및, 가만있어...

북(김채성) : 연결 및 운영과 관련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북(손종철) : 북과 남은 교통로 연결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 등을...

북(김승국) : 『들』을...

남(송영대) : 『들』입니까? 『등』이 아니고...

북(김승국) : 『들』을...

북(손종철) :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결 및 운영, 좋지요?

남(김태연) : 아니, 그건 지금 5항에서 거기서 수용해 주신 『북과 남은 육로, 해로, 항로 개설·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지금 거기서 수

용하셨기 때문에 여기 7항에서도 거기까지 얘기는 귀측대로 한다면 『북과 남은 교통로 개설·운영과 관련한』 이렇게까지는 5항과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북(손종철) : 북과 남은 교통로 연결 및 운영과 관련한...

남(김태연) : 아니 지금 5항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합의한 것, 『북과 남은 육로, 해로, 항로 개설·운영의 원활한』 그렇게 했었던 말이에요. 그것을 7항에서도 거기까지는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쓰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요.

북(손종철) : 또 이렇게도 또 써 봅시다.

남(송영대) : 아니, 기왕이면 통일적으로 쓰십시오.

북(김채성) : 아니, 통일적으로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위에는 그 앞에 항로가 있기 때문에 개설이라는 표현이 그 뒤에 들어가면 적정한데, 교통로 하면 교통로 개설보다도 연결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조항 3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항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기본문건이...

북(손종철) : (웃음) 아니 이게 지금 귀측의 먼저번 안에는 6항 『남과 북은 교통로 연결·운영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말이에요.

남(김태연) : 아니 이거 통일은 시키는데 귀측안도... 지금 합의가 안되어 있지만 귀측안 4항에 보면, 『북과 남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이게 귀측 안도 개설이라고 했다고, 교통로라고 하면 반드시 연결이라

고 쓴 것도 아니고...

남(송영대) : 귀측안 8항을 봐 주세요.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통로 개설과 운영...

북(김채성) : 그럼 개설과 운영으로 합시다. 개설과 운영...

남(송영대) :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과 운영... 운영과...

북(일동) : 『과』가 또 나오니까 개설 및...

남(송영대) : 뭐 좋아요.

북(손종철) :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남(송영대) : 뭐 좋습니다.

북(손종철) : 자, 그럼 우리 7항, 귀측 7항...

남(김태연) : 『등』이 아니라 『들』이라 이것입니까?

북(손종철) : 예, 『들』... 『북과 남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됐습니다.

남(송영대) : 그 다음에 내려가서요, 제4조 본문 그게 일치됩니다.

북(손종철) : 3조 8항은 어떻게 되나?

남(송영대) : 그것은 내용면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는 교통실무협의 회라고 하는 것을 박고 있고, 그쪽에선 그걸 박지 않고 그냥 공동위원회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북(손종철) : 그것 뭘 용의가 없어요?

남(송영대) : (웃음)...

북(손종철) : 이걸 공동위원회가 할 의무인데...

남(송영대) : 아니 그것 또 토론할까요? (웃음)

북(손종철) : 그래서 그쪽에서 석연치 않다면 넘깁시다.

북(김승국) : 공동위원회에서 교통실무협의회가 나오든지 무슨 교통체신 실무협의회가 나오든지 아직 논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박을 필요가 있어요?

남(송영대) : 그것은 다음에 문안정리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

북(손종철) : 예.

남(송영대) : 다시 돌아가서 제4조 본문...

북(김채성) : 본문이야 그대로니까, 그건 똑같으니까...

북(손종철) : 한번 봅시다.

남(송영대) : 한번 읽어 봅시다. 『제4조 남과 북은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여기서 우리는 설치와 연결사이에 가운뎃점이 있고, 귀측에는 없습니다.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북(손종철) : 그래서 제4조 이거 합의봤습니다. 문안정리되었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제4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북(김승국) : 저기 설치·연결사이에 점이 있다는데...

북(김채성) : 아, 그건 가운뎃점...

남(송영대) : 다음에 넘어가서요, 제4조에 들어가서 우리측 5항하고 귀측의 5항하고 이게 일치합니다. 해당이란 말이 하나 차이가 있는데요.

북(손종철) : 5항에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귀측은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우리는 해당이 있습니다.

남(송영대) : 해당은 앞에 교통로 개설과 관련해서 해당 국제협약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넣겠습니다.

북(손종철) : 자, 그럼 제4조 5항 『북과 남은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이렇게 문안정리되었습니다.

북(김승국) : 『우편과』입니까?

북(손종철) : 예, 우편과 전기통신...

북(김승국) : 아니, 『우편 및』이 아니고, 『우편과』예요?

북(손종철) : 우편과...

남(송영대) : 그 앞에도 『과』로 되어 있어요.

북(김승국) :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북(손종철) : 예, 우리 안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송영대) : 제4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김채성) : ...3항, 토론할 수 없나? 그쪽의 3항하고 우리 4항하고...

남(송영대) : 이것? 우리는 『정치적·군사적 목적』, 그쪽은 『다른 목적』...

북(김채성) : 다른 목적이 더 포괄적이 아니예요?

남(송영대) : 요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북(김채성) :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군사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리용해도 지금 일없다는 거예요?

남(송영대) : 아니...

북(김채성) : 다른 목적에 리용해도 일없다는 거예요? 정치·군사적 목적에만 리용 안하면 돼요?

남(신현웅) :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치·군사적...

북(김채성) : (웃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는 일체 리용하지 말라, 우리가 더 포괄적이예요.

북(손종철) : 그게 더 포괄적이예요.

남(신현웅) : 『정치적·군사적 목적 등 다른 목적』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합시다.

북(손종철) : 그걸 요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럼 협잡꾼들끼리는... 손 안대도 된다(웃음)...

남(신현웅) :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 부속합의서는 조금 구체성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송영대) : 그럼 그건 이렇게 하지. 거기다가 『정치적·군사적 목적 등에...』 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

북(김승국) : 아니 그 저 듣기도 싫은 정치적·군사적 목적 그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저 『다른 목적에』라고 점잖게 하면 다...

남(송영대) : 귀찮안을 보면 뭐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하고 막나오는 데 (웃음)...

북(손종철) :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근본문제니까... 여기서야 이렇게만 해 놓으면 협잡꾼들이 마음대로 리용한단 말이야.

남(송영대) : 아니, 거기다 『등』자 하나만 넣자구요.

북(김승국) : 그거 필요없다구요. 합의서 중앙에다 섬찍하게 그렇게 자꾸 ...

북(손종철) : 『다른 목적에...』 얼마나 포괄적이냐?

남(송영대) : 요건 다음 토의과제로 넘김시다.

북(손종철) : 넘기자요? 그러니까 위원접촉은 이렇단 말이에요. 내용조정은 못하는데 송선생은 아까 자꾸 내용조정부터 하자니까 이게...

남(김태연) :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 등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딱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

북(김채성) : 우린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말자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쓰자는 것이지.

남(송영대) : 규정을 너무 포괄화시켜 놓으면 집행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북(김채성·김승국) : 아니, 다른 목적이라니까... 이게 더 좋지요, 뭐.

남(신현웅) : 구체성이든지 예시성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북(김승국) : 구체성 명목하에 자꾸 엮어매 놓으면 안됩니다. 규정이라는 것을 발목을 자꾸 엮어매 놓으면 안됩니다.

남(송영대) : 엮어매는 게 아니라 공동위원회 일을 쉽게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넘겨주어야 합니다.

북(손종철) : 아, 그러지 않으면 공동위원회가 자기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항의합니다. 쓸데없이 분과위원회에서 자기네들 것까지 다 모르면서 했다... 이렇게 되면 그 항의를 다 어떻게 부딪치겠어요?

남(송영대) : 그런데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공동위원회가 알게 되면 그런 말을 못하죠. 구체적인 대책을 담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웃음)

북(김채성) : 이 문제에 있어선 비밀을 보장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명백하다고. 군사적 목적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무슨 문화적 목적이든, 무슨 협잡의 목적이든, 어쨌든 다른 목적에는 다 리용하지 말라...

남(송영대) : 그러니까 우리가 절충안을 냈잖아요? 군사적·정치적 목적 등 다른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말이야. 이렇게 하자구. 그러면 양쪽안이 다 수용되는 것 아닙니까?

북(김채성) : 세상사람들이 보면 무엇이라고 그러겠나, 이거...

남(송영대) : 서로서로 좋게 합시다.

북(손종철) : 자, 그러면 이것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넘겨 봅시다.

남(송영대) : 유보하자구요?

북(손종철) : 예, 류보...

남(송영대) : 그러면 할 수 없구만요.

북(손종철) : (웃음)알만큼 이야기하였는데 잘 납득 안하니까 또 시간을 주어야지.

남(송영대) : 5조 본문이 일치하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북(일동) : 같아요. 똑같습니다.

남(신현웅) : 여기는 점 하나 틀리지 않네요.

남(송영대) : 합의됐습니다.

북(손종철) : 자 제5조, 다시 읽어 봅시다. 『북과 남은 (남과 북은) 국제 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이거죠? 이것 문안정리하였습니다.

남(송영대) : 다음에 넘어가서 1항,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도 똑같지요?

북(손종철) :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1항 문항입니다. 그 다음...

남(송영대) : 다음 2항도 일치되어 있어요. 표현 하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북(손종철) : 그럼 봅시다. 2항 『북과 남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남(송영대) : 여기 귀측안을 보면 『경제협력과 교류』라 그러셨고, 우리는 『경제의 각 분야에서』, 이것이 차이 있죠? 또 『협의·추진한다.』 할 때 우리는 중간에 점이 있고, 그쪽에는 없죠?

북(손종철) : 각 분야에서, 교류분야에서... 『경제협력·교류분야』 이게 낫지 않아요? 경제협력·교류분야... 지금 교류분야니까 정확히 지명을 해서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 『경제 각 분야에서』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합의서대로 명기합시다. 명백히 경제협력과 교류분야...

남(김태연) : 그것은 우리가 받되 우리는 교류를 먼저 쓰기 때문에...

북(일 동) : 그건 그렇게 하세요.

남(송영대) : 그러면 『경제교류와 협력분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북(손종철) : 그래서 제2항 『북과 남은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경제교류와 협력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됐습니다.

남(송영대) : 이것도 우리는 가운데점이 있고 귀측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경제장은...

북(김채성 · 손종철) : 6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6조...

남(송영대) : 6조? 이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북(김채성) : 지원보장...

북(손종철) : 요 차이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아요.

남(송영대) : 우리 것은 지원 · 보장의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북(손종철) : 그렇죠.

남(송영대) : 귀측은 그게 없고 그 차이입니다.

북(손종철) : 내 의견을 얘기할까요?

남(송영대) : 말씀하세요.

북(손종철) : 이게 앞에 놓일 때에는 종전처럼 이렇게 찍는다. 그런데 뒤에 놓인 경우는 역시 찍지 않아도 일없지 않느냐? 앞의 것 부정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북(김승국) : 우리가 경제협력 · 교류장에다가 교통로 연결, 통신 연결을

다 포함해서 경제협력·교류로 이렇게 장으로 대표된 것만큼 뒤에서 지원보장은 그저 간단히 표기해도 일없습니다.

북(손종철) : 어떻습니까?

남(송영대) : 그런데 말이죠. 조금전에 우리가 토론한 제5조 2항, 제5조 2항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은 (북과 남은) 경제교류와 협력분야에서... 이렇게 나갔죠? 아까 그렇게 합의했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경제교류·협력으로 딱 박아 놓으면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의 대외협력관계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생긴다 이겁니다.

북(김승국) : 아니, 그게 왜 빠지겠어?

북(손종철) : 장명이 경제협력과 교류니까...

북(김채성) : 그럴, 그게 왜 빠져?

북(김승국) : 1장은 그저 경제협력·교류로 대표되는 것인 만큼 1장 전체를...

북(김채성) : 장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남(김태연) : 아니 그건 그런데, 장의 명칭은 우리 합의본 바에 따라서 경제교류와 협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그쪽 북측 안은 경제협력·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조는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협력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조는 또 남과 북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을 실시한다 해서 2조는 또 1장 제목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걸 다 제목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모아서 경제교류·협력 이

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요걸 6조에서는 좀더 명확하게 풀어주는 것이 나쁠 것도 없고, 더구나 6조는 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뜻이나 하면 6조 본문만 있지 동그라미 1,2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북(손종철) : 필요없습니다.

남(김태연) : 분명하게 박아주는 것이 제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북(손종철) : 그런데 이제 김태연선생이 얘기한 데서 경제에다 과학, 기술을 넣은 것은 우리가 그쪽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분야의 협력분야에 이것이 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제2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게 다 들어갑니다.

남(김태연) : 아니 뭐 그 뜻은 알겠어요. 어차피 1장 안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는데, 여기다 좀더 명확하게 박아서 나쁠 게 뭐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북(김채성) : 아니 박으려면... 이게 좀 불안하게 박아 놓았다고,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등과... 그러니까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여기 개발하고 투자만 협력인가, 이게 대표하는가... 등과, 이게 조금 불안하다 말이에요.

북(손종철) : 좀 구체적인 것 같은데 구멍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남(김태연) :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여기 우리가 자세하게 쓴 것은 1조에 있는 얘기를 압축해 넣고, 2조에 있는 얘기를 압축해 넣고, 3조, 4조

이걸 다해서 통신도 넣고, 교통도 넣고, 과학, 기술, 환경분야도 넣고, 물자교류... 이걸 다 넣자는 뜻이에요. 1, 2, 3, 4조에 있는 걸...

북(손종철) : 이것을 귀측안에서 1조에다 넣을 때는 이게 수공이 간다 이거지요. 아직 지금 전개를 안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 전개됐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에... 그야말로 위치를 잘 선택했습니다. 뒤에 군사적으로 볼 때도 지원포를 쓸 때는 앞에서 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뒤에서 광광 쏘준다 말이야. 뒤에 또 왔으니까 이제는 그것 다 포괄하는 제목을 다는 것이 간결하고 좋습니다.

북(김승국) : 솔직히 말해서 이 지원보장조항은 귀측에서 당국이 여기에 꼭 책임을 중시한다고 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걸 놓으면 이 합의서 전체의 어느 한 조항 맨 마지막에 놓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여기 지금 장에다 훑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귀측대로 하자면 조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조마다 그 지원보장하자는 걸 넣을 수 있는 것을 장마다 우리 하나 놓았는데,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해야지 이걸 다 진부하게 다 짜박느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송영대) : 그러면 제가 절충안을 하나 낼게요. 지금 제6조하고 제가 아까 문제를 다시 제기한 제5조 2항하고 이걸 좀 같이 보십시오.

우선 제6조 표현관계는 우리측에서 경제분야라고 하는 걸 박겠습니다. 박겠는데 이 경제분야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미 표시한 바와 같이 물자교류, 공동개발,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환경, 교통, 통신, 이게 다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요? 포괄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

리가 이걸 수용한다 이겁니다.

북(손종철) : 아 그럼, 처음부터...

남(송영대) : 그런데 같은 논리에서요, 제5조 2항도 거기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5조 2항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걸 과학, 기술, 환경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한하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요 표현을 바꿔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제6조의 포괄적 의미와 같이, 말이죠, 이걸 경제분야로 하자 그겁니다. 경제분야...

북(김채성) : 6조도 경제로 하고, 경제분야로 하고...

남(송영대) : 그렇죠.

북(김채성·손종철) : 그렇게 합시다.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며』 이렇게 되고...

남(송영대) : 그렇죠.

북(손종철) : 가만있어, 저 조금 봅시다.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 경제 각 분야에서...

남(송영대) : 아니 각 분야가 아니라 경제분야로 하자 이거예요.

북(김채성) :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남(송영대) : 그러면 경제분야 속에 경제교류·협력뿐 아니라 과학, 기술, 환경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된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거예요.

북(손종철) : 아니 원래 여기서 경제협력과 교류분야라는 게 그걸 다 담고 있어요.

남(송영대) : 아니,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6조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넓혀 놨잖아요? 그러니까 6조를 넓힌 것처럼 5조 2항도 이렇게 넓혀 놓자 그거예요.

북(손종철) : 5조 2항을 그러니까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분야에서 이렇게,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남(송영대) :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제가 읽어 볼게요. 『남과 북은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북(손종철) : 경제의 각 분야에서...

남(김태연) : 그러니까 그것은 귀측 안을 수용하는데, 5조 1항도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2항도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이렇게 하고, 6조도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이걸 그쪽 안을 받는다 이거죠.

남(송영대) : 예, 받는 거예요.

남(김태연) :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송영대) : 그 이야기입니다.

북(손종철) : 경제분야에서...

북(김채성) : 협력과 교류를 빼고 그저 경제분야로 하자...

북(김승국) : 통일시키는...

북(손종철) : 예, 그렇게 합시다.

남(송영대) : 자, 이거 합의된 겁니다.

북(손종철) : 자, 6조를 봅시다. 『북과 남은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보장한다.』 요렇게 했습니다.

남(김태연) : 우리는 그러니까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북(손종철) : 그제 이렇게 되면 전부지요?

남(김태연) : 그러니까 5조 2항도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북(김채성) : 예, 5조 2항...

북(손종철) : 경제분야에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1장이 끝났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남(송영대) : 그런데 여기서 우리측 제7조하고 귀측 제12조 이걸 조금 보면요, 우리측에서는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다.』 귀측안은 『이 합의서의 제1장 경제협력·교류의 이행은 북남경제협력·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사회문화협력·교류의 이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원회에서 맡아 한다.』 그리 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지난번에 귀측 위원장이 말씀하시기를 부속합의서 각 조항을 기본합의서와 일치시킬 경우에는 각 장에 이행기구를 명시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측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북(손종철) : 요거는 조금 놔둡시다.

남(송영대) :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유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북(손종철) : 그래서 요건 다음 취급할 때 합시다.

남(송영대) : 다음에요? 이거 참, 우리는 금방 합의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웃음)...

북(김승국) : 그렇게 합의 완전히 된 건 아니고 리해를 할 수 있다 이렇
게 했는데...

북(손종철) : 우리도 이거 완전 거부는 아니예요. 그래서...

남(김태연) : 그런데 그게 말이죠, 이 기본합의서에도 다 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손종철) : 그러니까 김태연선생, 그 논의를 다음 협의 때 또 새롭게 해
보자. 그래 오늘도 시간은 이젠 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까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남(신현웅) : 사회문화분야는 안합니까, 오늘?

북(손종철) : 또 다음 안하겠어요?(웃음)

남(신현웅) : 물론 또 하고 나머지 남은 것도 다 하고 그래 가지고 빨리
합시다.

북(손종철) : 보시오. 탁에서 오늘 이렇게 한 것도 좋고 들어가서 서로
맞추는 것도 또 좋습니다. 그래 거기서 새롭게 제기됐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 연구를 하고...

남(김태연) : 오늘 그만하자는 겁니까?

북(손종철) : 그럼.

남(신현웅) : 아까 2조 1항, 하나라도 더 합의했다는 항을 늘리기 위해서 보존, 보전, 거 편의대로 써서 합의하고 지나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씩 더 실적을 높이게 되잖아요?

북(손종철) : 신선생, 저기서 우리 저 수원들이 다 정식 썼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가?(웃음)

남(송영대) : 자 손선생,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오후라도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뭐 귀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또 존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 지금 일단 합의한 것 한번 총점검하고 끝내는 게 어떻겠어요?

북(김채성) : 점점을 해보면 그제...

남(송영대) : 제가 내용은 말하지 않겠고...

북(김채성) : 6조에 10개 항이로구만.

남(송영대) : 봅시다.

북(김채성) : 6조에 10개 항이야.

남(송영대) : 제목, 전문, 1장 제목은 이미 합의가 됐고...

북(손종철) : 예, 된 거예요.

남(송영대) : 다음에 제1조 합의됐습니다. 우리측 제1조, 귀측 1조... 그 다음에 우리측 5항하고 귀측 4항하고 이게 합의됐습니다.

북(손종철) : 그 다음에...

남(송영대) :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측 제8항하고 귀측 9항하고 합의되었습니다.

북(손종철) : 다음에 귀측 11항하고 우리 13항이 합의됐습니다.

남(송영대) : 예, 그렇습니다.

북(손종철) : 그 다음에 2조 제목이 합의됐습니다.

남(송영대) : 예, 그 다음에 2조 2항...

북(손종철) : 2항이 합의됐습니다. 또 3조가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항하고 4항이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6항하고 귀측 5항이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7항하고 7항이 합의됐습니다.

남(송영대) : 그 다음에 우리측 4조...

북(손종철) : 이것이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측 5항, 귀측 5항이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5조가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1항, 2항 다 합의됐습니다. 그 다음에 6조가...

남(송영대) : 6조 합의됐어요.

북(손종철) : 합의됐습니다.

남(송영대) : 자 오늘은 뭐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서 하게 되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접촉 언제 하시겠어요?

북(손종철) : 날짜를 어떻게 할까... 한 23일쯤에 할까요? 23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북(김채성) : 일요일날이군.

북(손종철) : 아, 일요일이구만. 그러면 한 21일로 합시다.

남(송영대) : 21일?

북(손종철) : 예.

남(송영대) : 이게 금요일날인데, 좀 하루 당기죠 뭐.

북(김채성) : 토요일날보다 낮지 않아요?

남(송영대) : 하루 당겨서 20일날 어때요?

북(손종철) : 그런데 우리 19일에 또 하나 있어요.

남(송영대) : 정치분과 있지요.

남(신현웅) : 20일날 목요일은 어때요?

남(송영대) : 목요일날 어때요?

북(김채성) : 하루 또 건너 해야지 그거... 그래야 통일원도 좀 편안할 거야.

북(손종철) : 그래서 21일로 합시다.

남(송영대) : 뭐 할 수 없죠. 21일날 하기로 합시다.

북(김채성) : 오늘 잘 됐습니다.

북(손종철) : 김태연선생이 새로 위원접촉에 나오니까 성과가 많습니다.

남(김태연) : 고맙습니다.

북(손종철) : 앞으로 그 자세로 좀 우리 합시다.

남(김태연) : 그런데 조금 아쉽습니다. 몇 가지 쉽게 넘어갈 것을 자꾸 넘기는데, 지금 UN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같은 것은 UN에 제출 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북(손종철) : 우리도 그건 압니다.

남(김태연) : 그런 통계를 같이 교환하자 이거예요. 그래야 경제하는 사람들이, 교류·협력하는 사람들이 그 통계를 이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북(김채성) : 그건 우리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예요.

북(손종철) : 그럼, 그 자체 반대하는 건 아니야.

남(송영대) :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충분히 우리 취지를 설명했으니까 돌아가셔서 좀 연구해 보세요.

북(손종철) : 그래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공통점 골라내는 과정이 우리 이해가 많이 돼서 이제 나머지도 또 그만큼 촉진된다...

남(송영대) :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내놨으니까 다음 나오실 때는 좀 보따리 하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더 빨라질 겁니다.

북(손종철) :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되다 말았는데 이쪽 문제들, 아까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송선생이 전문이니까 좀 잘해서 진척되도록 하십시오.

남(송영대) :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웃음)

북(손종철) : 내가 또 길어져서 말 안하겠는데...

남(송영대) : 그것은 다음에 또 분과위원회도 있고 위원장접촉도 있으니까...

남(신현웅) : 진짜 그것은, 우리 7천만 겨레한테 큰 실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여튼 그것은 잘 설득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남(송영대) :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북(손종철) : 수고했습니다.

<雙方 委員 人事 交換 後 退場>

交流 · 協力分野 附屬合意書 雙方案 比較(附錄)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제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p> <p>(전문)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 · 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경제교류 · 협력</p> <p>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p>	<p>(제목)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p> <p>(전문)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북남협력, 교류》의 리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경제협력, 교류</p> <p>제1조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업, 농업, 건설, 전력,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p> <p>② 남북사이의 물자교류 대상품목과 교류규모,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이하 경제공동위원회라 함)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③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 및 거래조건과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세부적 내용은 교류·협력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p>	<p>① 북과 남은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석탄, 유색 및 희유 금속광물, 수산자원 등에 대한 공동개발을 진행한다.</p> <p>②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관광을 비롯한 각 분야의 합영, 합작대상과 물자교류품목은 공동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방향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토의하여 정한다.</p> <p>③ 자원의 공동개발, 공업, 농업, 광업, 관광을 비롯한 각 분야의 합영, 합작형식과 규모, 물자교류의 량과 지불조건 등은 거래당사자들사이에 체결되는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따라 정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④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교류·협력당사자는 당해 사업에 대해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의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p> <p>⑤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p> <p>⑥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p>	<p>⑩ 북과 남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p> <p>④ 물자거래에서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p> <p>⑤ 북과 남사이의 물자교류는 호상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p> <p>⑥ 북과 남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쌍방 거래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도 취할 수 있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⑦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등 남북사이의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⑧ 남과 북은 교류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p> <p>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통계</p>	<p>⑦ 북과 남은 물자교류에서 청산 결제를 맡아 수행하기 위한 은행들을 정하며 결제업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지정된 은행들이 토의하여 해결한다.</p> <p>⑧ 북과 남사이의 결제화폐는 스위스프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전환성 화폐로도 할 수 있다.</p> <p>⑨ 북과 남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북남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p> <p>⑩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공업규격 등을 서로</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 등을 상호 교환하며 교류·협력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 관련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p>교환하며 협력, 교류당사자가 지켜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p>
<p>⑩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⑫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자본의 이동과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p>
<p>⑪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p>	<p>⑬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p>
<p>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인 문제들을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⑭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관련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전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p> <p>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p>	<p>제2조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협력·교류를 실현한다.</p> <p>① 북과 남은 과학, 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연구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존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p> <p>②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제3조 북과 남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공로를 개설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p> <p>②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p> <p>③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완화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비롯한 육로와 김포공항-순안비행장간을 비롯한 항로를 연결하여 개설한다.</p>	<p>① 북과 남은 우선 남포항과 인천항, 원산항과 부산항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p> <p>④ 북과 남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물자교류와 인원래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p> <p>② 북과 남은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경의선 철도와 개성-문산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고 순안비행장과 김포공항사이의 공로를 개설한다.</p> <p>③ 북과 남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 및 인원래왕 규모가 커지는 데 따라 육로, 해로,</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 개설·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p>⑤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p> <p>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제조치를 취한다.</p> <p>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운영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p>	<p>공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개설한다.</p> <p>⑤ 북과 남은 육로, 해로, 공로개설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p>⑥ 북과 남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공로를 통해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p> <p>⑦ 북과 남은 교통로 연결과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등을 존중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⑧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그 승무원의 출입절차, 교통수단별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남북사이의 교통로 개설·운영과 관련한 실무문제의 협의·실천은 경제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교통실무협의회에서 한다.</p>	<p>⑧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p>
<p>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p>제4조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p>
<p>① 남과 북은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설치하여 빠른 시일안에 우편물과 전기통신을 교환·연결한다.</p>	<p>①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우편과 전기통신을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② 남과 북은 공적사업과 남북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에 필요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p>	<p>②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보장에서 당면하여 공적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p>
<p>③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p>	<p>④ 북과 남은 우편,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이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지 않는다.</p>
<p>④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 연결·교환의 원활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과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p>	
<p>⑤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p>	<p>⑤ 북과 남은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⑥ 남과 북은 상대측 주민이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위해 자기측 주민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p> <p>⑦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전달방법 등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실무문제의 협의·실천은 경제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통신실무협의회에서 한다.</p>	<p>③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⑥ 북과 남사이의 우편물과 전기통신교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우편물 및 전화교환실 설치문제를 비롯한 기타 제반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제5조 북과 남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② 남과 북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p>①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p> <p>② 북과 남은 경제협력과 교류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p>제6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물자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등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통, 통신의 연결·운영을 지원·보장한다.</p>	<p>제6조 북과 남은 경제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보장한다.</p>
<p>제7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p>제12조 이 합의서의 《제1장 경제협력, 교류》의 이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사회문화협력, 교류》의 이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맡아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사회문화교류 · 협력</p> <p>제8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 ·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경험, 연구자료, 출판 · 보도자료와 목록, 방송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의 정보 ·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p> <p>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 등에 문화 · 예술단을 상호 교환하며, 체육경기대회 공동개최, 쌍방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초청 · 참관, 대표단 파견, 기술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사회문화협력, 교류</p> <p>제7조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교류를 실현한다.</p> <p>①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정보자료를 호상 교환한다.</p> <p>②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③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 등을 통한 상호 인원교류 및 관련기관·단체간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p>	<p>③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의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를 실현한다.</p>
<p>④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 조사, 편찬사업 및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실시한다.</p>	<p>④ 북과 남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민족의 리익을 위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p>
<p>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⑤ 북과 남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출판, 건축, 사진을 비롯한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p>
<p>⑥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 교류</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 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이하 사회문화공동위원회라 함)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9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p> <p>①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p>	<p>제8조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한다.</p> <p>① 북과 남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민족구성원들이 자기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래왕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p> <p>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래왕은 우선 판문점을 통하여 하며 점차적으로 모든 통로(국제공로 포함)로 하도록 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②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상대측 주민의 방문목적 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p> <p>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의 법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접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p> <p>④ 남과 북은 왕래하는 자는 쌍방 당국이 허가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왕래에 필요한 물품과 현금을 휴대할 수 있다.</p>	<p>③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한다.</p> <p>④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철폐하며 래왕자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p> <p>⑤ 북과 남은 래왕자들이 상대측 법과 사회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래왕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⑤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교통수단 등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p> <p>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p> <p>⑦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왕래절차 등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0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p>	<p>⑥ 북과 남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래왕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p> <p>⑦ 북과 남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절차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p> <p>제9조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p> <p>①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여</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 서 서로 협력한다.</p> <p>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등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 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p>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 서 서로 협력한다.</p> <p>②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 하여 노력한다.</p>
<p>제11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 술, 보건, 체육 및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과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접촉 을 지원·보장한다.</p>	<p>제10조 북과 남은 사회문화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보장한다.</p>
<p>제12조 이 합의서 제2장<사회문화 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 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 실천은 사회문화공동위원회에서 한다.</p>	<p>제12조 이 합의서의 《제1장 경제협 력, 교류》의 이행은 북남경제협 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사회문화협력, 교류》의 이행은 북 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 에서 맡아한다.</p>
<p>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p>	<p>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제13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p> <p>① 이산가족들의 범위는 가족의 경우는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고 친척의 경우는 방계에서 8촌, 처가와 외가로는 4촌으로 한다.</p> <p>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서신거래를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며, 전기통신 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③ 남과 북은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을 실현하며, 쌍방이</p>	<p>제11조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래왕과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p> <p>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합의하여 다른 지역에도 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하게 할 수 있다.</p> <p>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시한다.</p> <p>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방문이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수 있다.</p> <p>⑥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p> <p>⑦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p>	<p>②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래왕절차에 따라 실현하도록 한다.</p> <p>③ 쌍방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p> <p>④ 쌍방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 편의를 제공한다.</p> <p>제14조 이 합의서 제3장<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 및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등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주관하에 하도록 한다.</p> <p>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적십자회담을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p> <p>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p>	<p>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p> <p>⑥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분 조항들의 이행을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주관하도록 한다.</p> <p>⑦ 북과 남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p> <p>⑤ 북과 남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법적, 제도적, 물질적 조건을 보장한다.</p>

우리측 6차 수정안	북측 5차 수정안
<p data-bbox="296 216 683 267">제 4 장 수정 · 발효</p> <p data-bbox="131 997 847 1144">제1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 보충할 수 있다.</p> <p data-bbox="131 1242 847 1481">제17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 data-bbox="909 216 1557 267">제 4 장 리행기구 및 수정, 발효</p> <p data-bbox="873 365 1597 902">제12조 이 합의서의 《제1장 경제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제2장 사회문화협력, 교류》의 리행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에서 맡아한다.</p> <p data-bbox="873 997 1593 1144">제13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충할 수 있다.</p> <p data-bbox="873 1242 1593 1481">제1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서기 1992년 8월 28일 50부 발간	
발간업체 : 문성인쇄주식회사 738 - 7434 738 - 0619	
대표자 : 김 재 회	
인가근거 : 조내자2066 - 14387호(64.12.18)	
참여자	통 일 원 교육협력국
	행정사무관 김 진 구